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192-14

PCT 국제출원가이드

PCT국제출원가이드

PATENT COOPERATION TREATY

2008.12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2008. 12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국제출원과
TEL : 042-481-5208
FAX : 042-472-7140
<http://www.pct.go.kr>



특
허
청



PCT국제출원가이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kipo.go.kr>

I

개 요

1. PCT국제출원이란? 4
 - (1) 해외출원의 필요성 4
 - (2) 해외출원 방법 4
 - (3) PCT의 연혁 5
2.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5
3. PCT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7
 - (1) PCT국제출원제도의 장점 7
 - (2) PCT국제출원제도의 단점 8
4. PCT국제출원시 유의사항 9
 - (1) 이중의 단계 9
 - (2) 엄격한 절차 9
 - (3)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9

II

PCT국제출원 절차

1. 개 요 12
2. 국제단계 12
 - (1) 국제출원 12
 - (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17
 - (3) 국제조사 19
 - (4) 국제공개 24
 - (5) 국제예비심사 26
3. 국내단계 29
 - (1) 개 요 29
 - (2)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 등 29
 - (3)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29

III

PCT국제출원 등 서류작성

1. 국제출원서류 작성내용 및 요령 40
 - (1) 일반적 사항 40
 - (2) 출원서(Request) 40
 - (3) 명세서(Description) 55
 - (4) 청구범위(Claims) 54
 - (5) 요약서(Abstract) 56
 - (6) 도면(Drawings) 56
 - (7)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58

... CONTENTS

2. PCT-SAFE를 이용한 출원 59
 - (1) PCT-SAFE EASY MODE에 의한 출원 59
 - (2)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59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60
4. 주요 중간서류 종류 및 작성 64
 - (1)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64
 -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65

IV

PCT국제출원 지원제도

1. 신청자격 70
2. 신청시기 및 비용지원범위 70
3. 지원금액 70
4. 지원건수한도 및 기타사항 70
5.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71
6. 접수시 유의사항 71
7. 문의처 및 신청서식 안내 71



설명자료

1. PCT국제출원절차와 일반 해외출원절차 비교도 10
2.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시 제출서류 30
3. 국제조사기관 업무절차도 31
4. 한국어 국제공개로 더 쉬워진 국제특허출원 32
5.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절차도 35
6.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36
7. PCT 국제출원 절차도 37
8. PCT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Timetable) 38
9.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등 보정시 제출서류 68



참고자료

- PCT 체약국 현황 목록 76
- PCT 체약국 현황 77
- 공개된 PCT 국제출원 확인 및 검색 78
- 국내단계 진입기간 일람표 81
- PCT 국제출원 서식(Request) 83
- PCT 국제예비심사청구 서식(Demand) 96
- PCT 국제출원관련 주요 통계(2007년, WIPO PCT연보) 101



I 개 요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PCT국제출원이란?

- (1) 해외출원의 필요성
- (2) 해외출원 방법
- (3) PCT의 연혁

2.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3. PCT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 (1) PCT국제출원제도의 장점
- (2) PCT국제출원제도의 단점

4. PCT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1) 이중의 단계
- (2) 엄격한 절차
- (3)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I 개요

1. PCT국제출원이란?

(1) 해외출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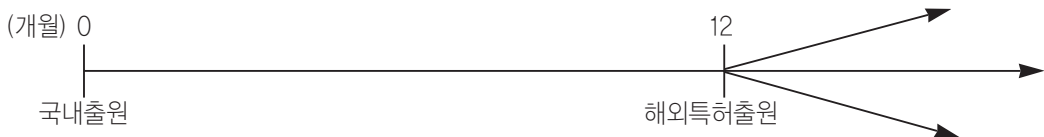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의 약자

(2) 해외출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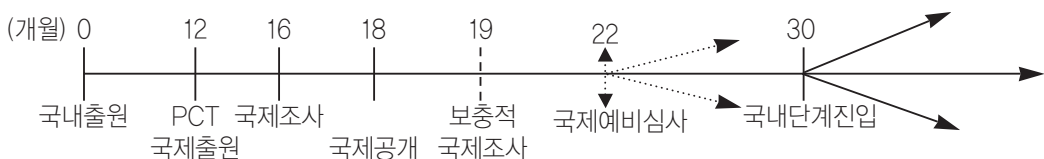
①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PCT의 연혁

일 자	내 용	비 고
1970. 6. 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일명 워싱턴조약
1977. 10. 24	조약발효요건 충족(\$63)	영국의 조약비준
1978. 1. 24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1978. 1. 24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1979. 3.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한국
1980. 5. 4	파리협약 가입	한국
1984. 5. 10	PCT 가입(PCT 제2장 유보)	한국(36번째 가입국)
1984. 8. 10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한국
1990. 9. 4	PCT 제2장 유보 철회	한국
1997. 9.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한국(WIPO총회)
1999. 12. 1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	한국
2007. 9. 27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WIPO 총회
2009. 1. 1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관련 업무 개시	한국

2.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①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국제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②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③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 (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最先)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④ 국제공개용번역문(Translation for International Publication)

모든 PCT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로 국제공개가 행해지는데, 만약 한국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국제공개를 위해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국제공개용번역문(영어)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한국어 국제공개어 채택에 따라 2009.1.1. 이후 국제출원부터는 제출절차 폐지**

⑤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⑥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RO/IB)

⑦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2004. 1. 1. PCT 규칙의 개정으로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⑧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3. PCT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1) PCT국제출원제도의 장점

①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성제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이상 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PCT 국제출원시에는 하나의 언어로 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한국 특허청의 경우 한국어, 영어, 일어) 제출하면 되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스위스 등 일부국가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또는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PCT국제출원제도의 단점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4. PCT국제출원시 유의사항

(1) 이중의 단계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여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3)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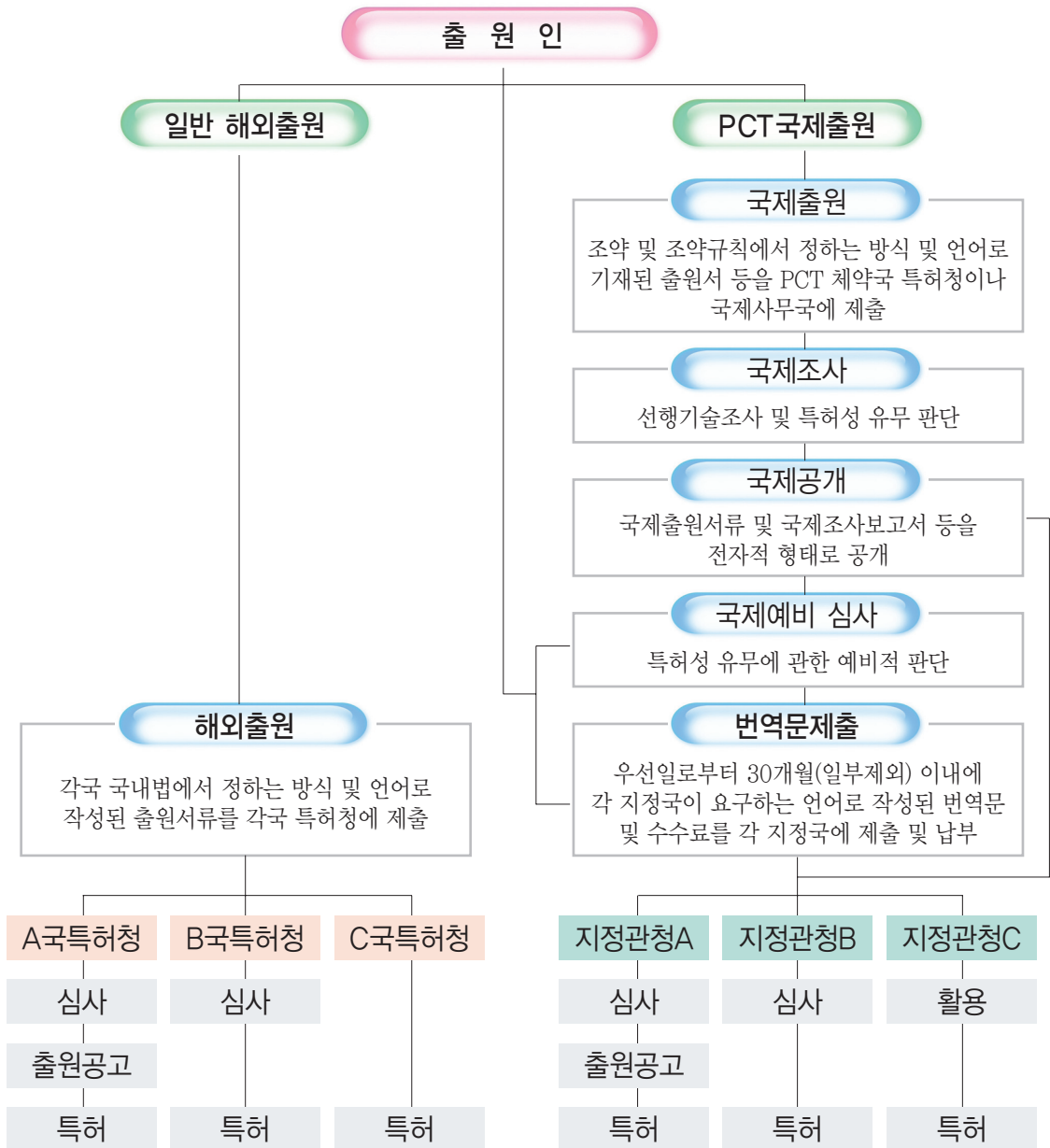


PCT국제출원가이드



설명자료 1

[PCT국제출원절차와 일반 해외출원절차 비교도]





II PCT국제출원 절차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개 요

2. 국제단계

- (1) 국제출원
- (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 (3) 국제조사
- (4) 국제공개
- (5) 국제예비심사

3. 국내단계

- (1) 개 요
- (2)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 등
- (3)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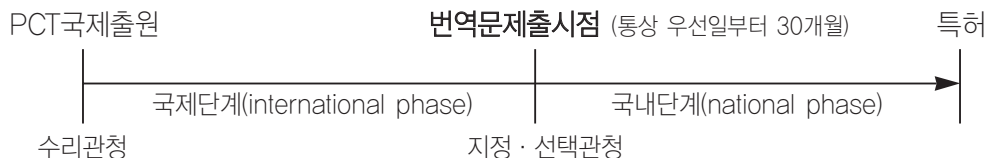


II PCT국제출원 절차

1. 개요

PCT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난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절차이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한다.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의 구별은 PCT용어는 아니나 간결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국제단계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 그 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출원인의 보정 등이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처리가 PCT 및 PCT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1) 국제출원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계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 국제사무국 포함)에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 특허청(지정관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i)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는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 출원하는 외국인,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이다.

ii) PCT국제출원언어

PCT국제출원서류는 국어·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국제출원과 관한 서류는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한다.

* 국제출원언어 :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

iii) 보호의 대상

PCT국제출원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실용증·추가특허·추가증·추가발명증·추가실용증 등의 출원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만 인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iv) 국제출원서류

가. 제출서류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Request), 명세서(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요약서(Abstract),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및/또는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등을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기탁증을 명세서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FD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방법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류 3통을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에 의하여 출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Fax로 제출한 출원인은 Fax에 의한 출원서류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소인으로 확인하는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발신주의가 아니고,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v) 수수료납부

PCT국제출원의 경우 수수료는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가 있으며, 이외에도 우선권서류송달료 등 추후 절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 필수 수수료인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는 동 수수료의 총합 금액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서 발송되며, 그 기간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vi) 국가지정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한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 러시아의 경우 소위 “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ii) 우선권주장

가. 의의

예를 들어 체약국 A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체약국 B에 특허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면, B국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 등을 판단함에 있어 A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나.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

파리협약, WTO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 및 자국내에 한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국제출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출원들이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우선권주장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양 출원간에는 발명의 동일성을 요한다. 그리고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最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 우선권의 회복 (한국특허청 유보)

① 개요

국제출원이 우선권기간(最先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에도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허용하는 제도이다(PCT 규칙 26bis.3). 국제단계 중의 절차는 수리관청에 관련되며, 경과된 기간의 최대치는 경과일부터 2월, 즉, 우선일부터 14월까지이다.

② 조건

- 신청서는 수리관청에 제출되어야 함
- 우선권기간의 최대 연장: 2월
-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의 진술
- 상기 진술을 뒷받침할 선언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③ 우선권회복의 기준

우선권회복은 해당 관청의 적용기준에 따라 우선권기간내에 출원하지 못한 것이

i)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거나

ii) 비고의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관청은 적어도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할 수도 있다.

④ 적용의 유보

상기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관청에서는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관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8.10. 1. 현재 유보를 통보한 국가는 아래와 같다.

알제리, 쿠바, 인도네시아, 독일, 헝가리, 체코, 그리스, 벨기에, 필리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브라질, 프랑스, 노르웨이, 인도, 스페인, 콜롬비아



라. 우선권주장의 절차

① 출원서에 기재

- 출원서(Request)에 선출원일자,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명을 기재한다.
- 국제출원일 전 14월 내에 출원된 선출원에 대한 모든 우선권 주장은 우선권이 수리관청에 의하여 회복되지 않더라도 출원상에서 유지된다. 즉, 국제단계에서 기간 산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수리관청은 이에 대하여 무효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4월과 우선일부터 1년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우선권서류의 제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수리관청의 책임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준다.

viii) 국제출원 등의 취하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 국제단계 진행 중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처리 또는 국내심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없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 경과하여 국내 단계에 이행된 경우에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으면 된다.

(2) 국제출원의 방식심사

i) 방식심사의 의의

방식심사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관청은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수리관청의 국제출원일 인정은 모든 지정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ii) 보완사항

가. 방식요건

- ①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가지고 있는가?
- ② 국제출원서류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 ③ 국제출원서류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하나 이상의 계약국 지정여부
 -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여부
 -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제출여부

나. 처리방법

방식심사 결과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 결함을 치유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하거나, 또는
-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인용에 의하여 보완할 것
(한국특허청 유보)

을 통지한다. 보완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보완이 없거나 보완을 하였더라도 여전히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인용에 의한 보완 (한국특허청 유보)

① 개요

국제출원에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있으나 그 누락된 부분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용에 의한 보완 절차를 통해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누락된 요소 또는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



PCT 국제출원가이드

② 조건

- 우선권 출원에 누락된 요소 또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출원서에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함(출원서에 관련 사항이 인쇄되어 있음)
- 인용에 의한 보완을 기간내에 확인하여야 함(국제출원 또는 보완통지일부터 2월)

* 관할기관 : 수리관청

- ③ 인용에 의한 보완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요소나 부분이 접수된 날로 국제출원일이 된다.

④ 적용의 유보

상기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관청에서는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관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8.10. 1. 현재 유보를 통보한 국가는 아래와 같다.

쿠바, 인도네시아, 독일, 헝가리, 체코, 벨기에, 필리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라. 명세서 등의 일부 누락에 관한 처리

- ① 명세서 일부, 청구범위 일부, 모든 도면, 도면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누락 사실 통지 또는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하여 출원인이 그 통지일부터 2월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면 그 누락된 부분이 수리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 ② 상기 ①의 절차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정정되었으나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의 정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수리관청에 제출되는 서면을 통해 누락 부분을 무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누락 부분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출원일의 정정은 행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정정 이전의 국제출원일로 돌아가게 된다.

iii) 보정사항

가. 방식요건

- ①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였는가?
- ② 요약서가 제출되었는가?
- ③ 기타 특허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나. 처리방법

상기요건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한다. 보정으로 결함이 치유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함이 없던 출원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적정한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한다.

(3) 국제조사

i) 국제조사의 개념

국제조사는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 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 선행기술(prior art)이란 당해 국제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서면'에 의한 개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의미

ii) 국제조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ii) 국제조사기관의 주요업무

가.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모든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의 대상이 국제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제조사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PCT 국제출원가이드

국제조사기관은 청구범위 전부가 국제조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청구범위 일부에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한다.

나. 발명의 단일성 조사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납부를 명하고,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속행한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만 국제조사를 수행한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다.

다.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누락여부 확인

국제조사기관은 수리관청으로부터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되었다는 보정통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직접 발명의 명칭을 정하거나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조사기관이 요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공개언어로 작성하여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송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약서에 대한 수정 및/또는 작성된 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국제조사의 핵심 업무로서 청구범위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비된 문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주요 각국의 특허문헌, 정기간행물, 논문 등이 최소한 자료로써 조사의 대상이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기준일은 출원일이다.

마. 특허성여부 판단

2004년도부터는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선행기술조사가 주 기능이었던 국제조사기관의 기능이 대폭 확장되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라는 이름으로 작성한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 및 작성언어는 국제조사보고서와 같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출원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없이, 특허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출원건에 대하여 작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iv)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가. 작성기한

국제조사기관은 조사용사본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나. 국제조사보고서의 활용

① 절차진행의 판단자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명백히 기재된 관련 선행기술로 인하여 출원된 발명의 권리획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하거나 국내 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청구범위 보정(PCT 제19조 보정)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보정하면 권리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님에 주의)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보정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국제출원서 및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공개가 된다. 제19조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 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 under Article 19(1)")를 첨부할 수도 있다¹⁾.

③ 출원인은 ②에 언급된 보정 이외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기한과

1) 설명자료 2 참조



PCT 국제출원가이드

동일한 기간내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기초하여 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 발행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출원인의 요청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 기관은 누구에게도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과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의 언어가 지정관청의 공식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각 지정관청은 영어로 된 번역문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지정관청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어번역문을 해당 지정관청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 제공

2009.1.1. 이후 작성되는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는 문헌을 웹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자료 입수 방법

- 특허청 영문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다운로드 가능
(<http://www.kipo.go.kr/kpo/eng/> => Patent Search)
- 국제조사보고서 발송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
-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
-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선언서 송부통지서(서식 ISA/220)를 통해 안내

*온라인 수신을 신청한 경우 상기 검색뿐 아니라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병행 송부

◆ 보충적 국제조사²⁾

i) 보충적 국제조사의 개념

출원인에게 주(主) PCT 조사에 추가하여 국제조사기관에 대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보충적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ii) 보충적 국제조사의 목적

- 국내단계에서의 새로운 선행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이점을 제공
- 출원인에게 늘어나는 다양한 언어의 선행기술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보충적 국제조사는 참여하는 국제조사기관(ISA)이 정하는 제한 범위내에서만 이용 가능

iii) 보충적 국제조사의 발효일 : 2009. 1. 1.

iv) 적용대상

출원일에 관계없이,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을 위한 우선일로부터 19개월 기한이 2009.1.1. 이후에 만료하는 국제출원

v) 보충적 국제조사 제공현황

- 2009.1.1.부터 보충적 국제조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 : 러시아, 노르딕, 스웨덴
- 2009년 중 보충적 국제조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 : 오스트리아
- 2010.1.1.부터 보충적 국제조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 : 유럽특허청, (핀란드)
- * 2009.1.1.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3개 기관 모두 영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임.
따라서 영어로 출원한 경우 별도의 번역문이 필요하지 않음

vi) 보충적 국제조사의 요건

- 신청서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신청일부터 1월 이내): 보충적 조사료 및 보충적 조사 취급료

2) 2009.1.1.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며, 한국 특허청은 현재 시행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19월 만료 전
- 주(主) 조사를 수행한 ISA는 보충적 조사를 위한 기관으로 선택불가
- 보충적 조사 신청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 전에 보충적 조사를 위한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취하가능
-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월 이내에 작성

v) 보충적 국제조사 수수료

o 러시아

- 보충적 조사 취급료 : 200 스위스프랑
- 보충적 조사료 :
 - 350 미국달러에 상당하는 스위스프랑
 - 500 미국달러에 상당하는 스위스프랑(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을 이유로 국제조사보고서부작성선언서가 발행된 경우)

o 스웨덴

- 보충적 조사 취급료 : 200 스위스프랑
- 보충적 조사료 : 2,726 스위스프랑

o 노르딕

- 보충적 조사 취급료 : 200 스위스프랑
- 보충적 조사료 : 2,726 스위스프랑

(4) 국제공개

i) 국제공개의 의의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ii) 국제공개의 대상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공개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취하간주·전 지정국 지정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와 미국만을 지정한 경우(미국은 자국에 관한 한 국제공개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국제공개가 행하여지지 않는다.

iii) 국제공개 시기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공개 신청을 하면 즉시 공개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조기공개신청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납부된 직후 국제공개를 행한다.

iv) 국제공개 내용

국제공개는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출원서 자체를 제외한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 전문이 공개되는데, 출원서의 서지적 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 제19조 보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된 사항 및 설명서,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v) 국제공개언어³⁾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개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된다. 2009. 1.1.부터 기존에 한국어 출원인 경우 제출되던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vi) 국제공개 효과

국제공개 효과는 각 지정국(선택국)의 국내법에 정한 바에 의하며, 그 효과의 발생 시기는 PCT 제29조에서 정한 시기 중에서 선택적으로 행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공개된 출원은 국제공개일로부터 선행기술의 일부를 구성한다.

3) 2007.9.24.부터 10.3.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한국어 국제공개로 더 쉬워진 국제특허출원” 자료를 참조



(5) 국제예비심사

i) 개념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ii)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일본특허청(국제조사 절차를 일본특허청에서 행한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ii)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가. 청구요령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청구시기 및 효과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에 관한 PCT 조약의 개정·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PCT 체약국⁴⁾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되고, 동 체약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그 체약국에 있어서의 국내단계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0월에서 최소 30월로 연장된다.

다. 국제예비심사 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제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4)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이상 3개국(2008. 10. 1. 현재)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해당 취하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행하여 졌다면 우선일로부터 19월 이내에 예비심사청구를 해야 국내단계진입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되는 일부 PCT 계약국(각주 참조)인 선택국에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시키면 되지만, 20개월 후에 행하여 졌다면 국제출원은 해당 선택국에서 취하된 결과가 된다.

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간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1차 견해서로 본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내에 청구범위는 물론 명세서 및 도면까지도 원출원의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며 의견서의 제출도 가능하다.

iv)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주요업무

가. 국제예비심사의 대상범위 확정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뿐만 아니라 PCT 제19조 보정서⁵⁾ 및 제34조 보정서⁶⁾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대상으로 한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하여 우선권서류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사본 송달요청을, 출원인에게 번역문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우선권서류 및 번역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나. 출원인과 의견교환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출원인은 심사과정에서 구두, 서면,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연락이 가능하다.

다. 견해서(written opinion)의 작성

견해서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부정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반드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서면통지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가 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

5) 설명자료 2 참조

6) 설명자료 9 참조



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라. 발명의 단일성 심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요구에 응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했으나 여전히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주(主)발명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마. 명세서 등의 보정(PCT 제34조 보정)의 처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전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명세서, 청구 범위,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⁷⁾. 보정서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v) 국제예비심사보고서

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보고서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라는 이름으로 작성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라는 내용이 부기된다.

나. 작성기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PCT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

- 출원인은 예비심사결과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7) 요약서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로써 PCT 국제단계에서의 절차가 종료되고, 이후 PCT국제출원을 송달 받은 지정관청(선택관청)이 그 나라의 국내법에 의하여 특허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3. 국내단계

(1) 개 요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단계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개월)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 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국내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특허법상의 국내 단계진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2)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 등

i) 번역문 제출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 PCT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에 대한 번역문도 제출한다.

국내서면제출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간주 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보정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i) 국내수수료 납부

출원인은 번역문 제출시의 납부자번호로 해당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무효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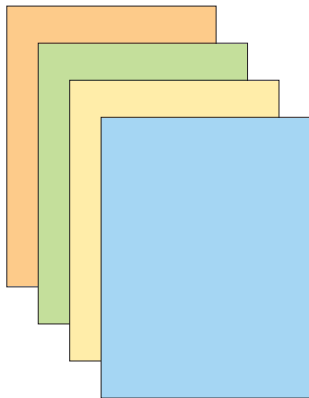
(3)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2006. 1. 1. 이후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면 된다.



설명자료 2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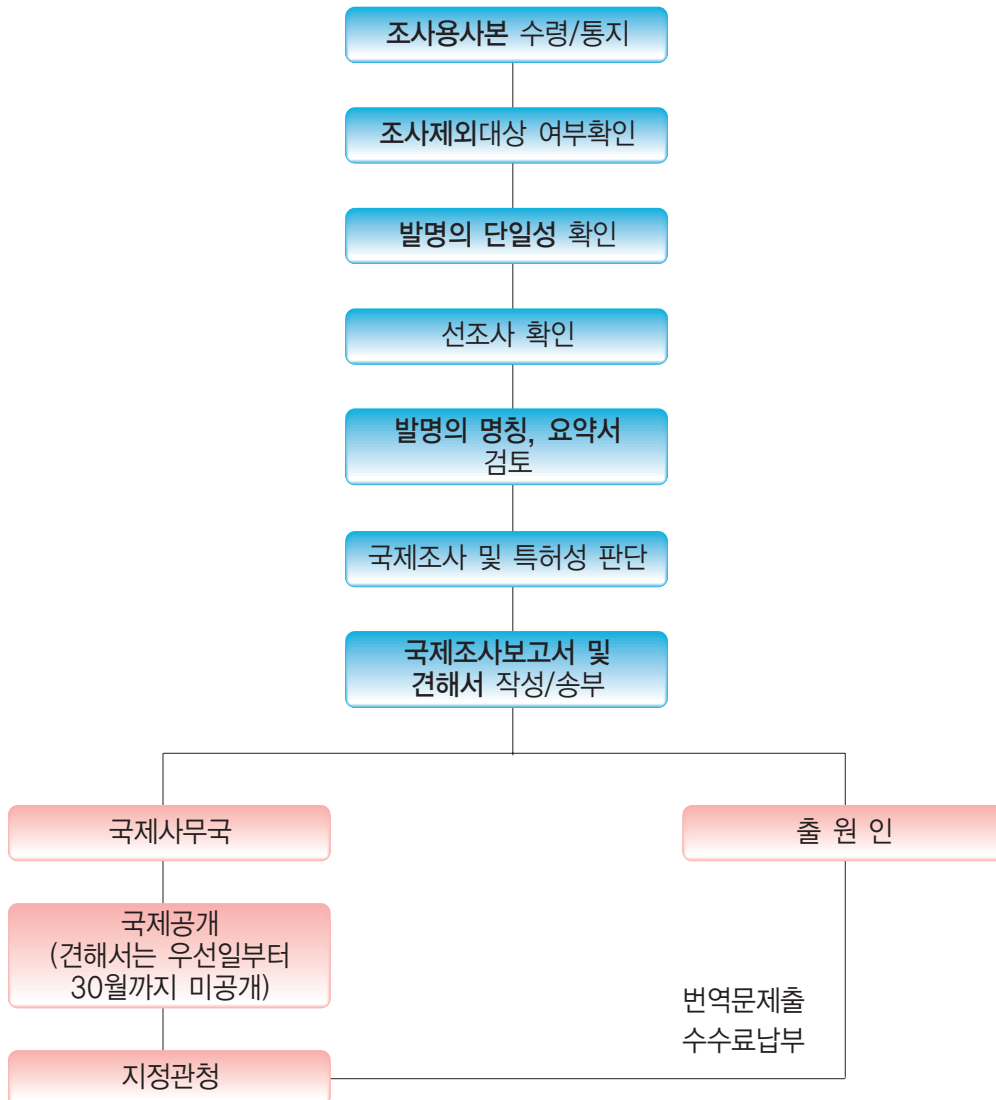


- 서 한 : 기본 서지사항, 출원시의 청구범위 및 보정된 청구범위 사이의 상이점에 대하여 기재
- 대체용지 : 보정에 의하여 달라진 청구범위 각 용지를 첨부
- 설 명 서 : 보정내용을 설명하고,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의무 제출 서류는 아님)
- 필요한 경우 위임장





[국제조사기관 업무절차도]





한국어 국제공개로 더 쉬워진 국제특허출원

- 한국어 출원시 영어번역문 제출 절차 폐지 -

2007년9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되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께서 우리 특허청에 한 개의 국제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공개어로 공개되고 전 세계 PCT 가입국에서 우리 특허청에 출원한 날과 동일한 날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해외에서 특허취득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등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출원인에게는 PCT 국제출원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PCT 국제출원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의해 2009년1월1일부터 PCT 국제출원제도가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PCT 국제출원하신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PCT 국제출원서, 명세서, 보정서 등 각종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출원인이 우리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기타 절차관련 서류를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출원인도 쉽게 국제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영어로 PCT 국제출원하시면, PCT 국제출원 절차는 지금과 같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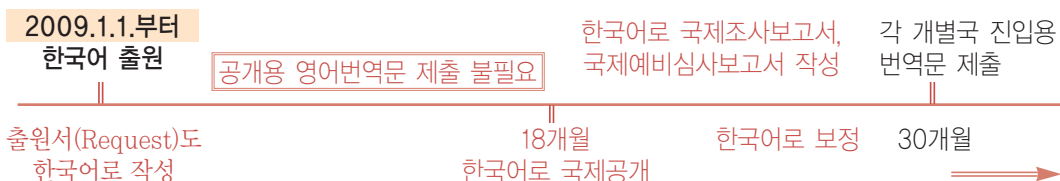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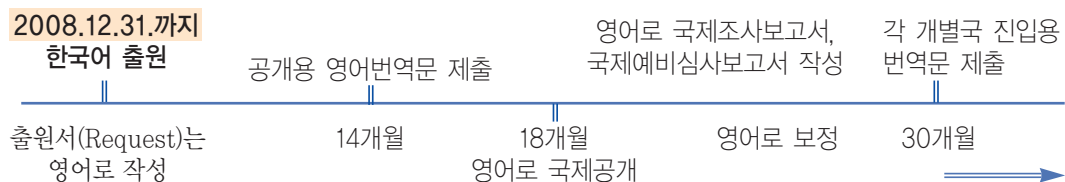
* 국제조사보고서 : 선행기술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 특허가능여부에 관한 심사결과가 수록된 심사관의 견해서

•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 제출 절차가 없어집니다.

– 종전에 한국어 PCT 국제출원시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을 제출하던 절차가 없어집니다. 한국어 PCT 국제출원은 한국어로 국제공개되므로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 작성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됩니다.

※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 제출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영어로 국제공개하려면 출원인께서는 명세서 등 PCT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하고 영어로 국제공개하실 수 없습니다.





PCT 국제출원가이드

- 한국어로 공개된 WIPO 공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한국어 PCT 국제출원된 기술 문헌을 한국어로 국제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제공개 사이트를 통해 우리 출원인들이 한국어로 된 WIPO 공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1월 1일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출원인께서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하신 것은 한국어로 국제 공개되며, 영어로 PCT 국제출원을 하시면 영어로 국제공개가 됩니다.

※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하신 출원인은 지금처럼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밖에,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한 후 출원인께서는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을 작성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각 개별국 진입 전까지 특허가능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PCT 국제출원은 한국어로 국제공개되기 때문에, 원래 한국어 PCT 국제출원된 것과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상의 표현 차이로 인한 분쟁 우려가 사라집니다.

※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전에 각 개별국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 진행가능



출원서, 청구서 보정서
등을 한국어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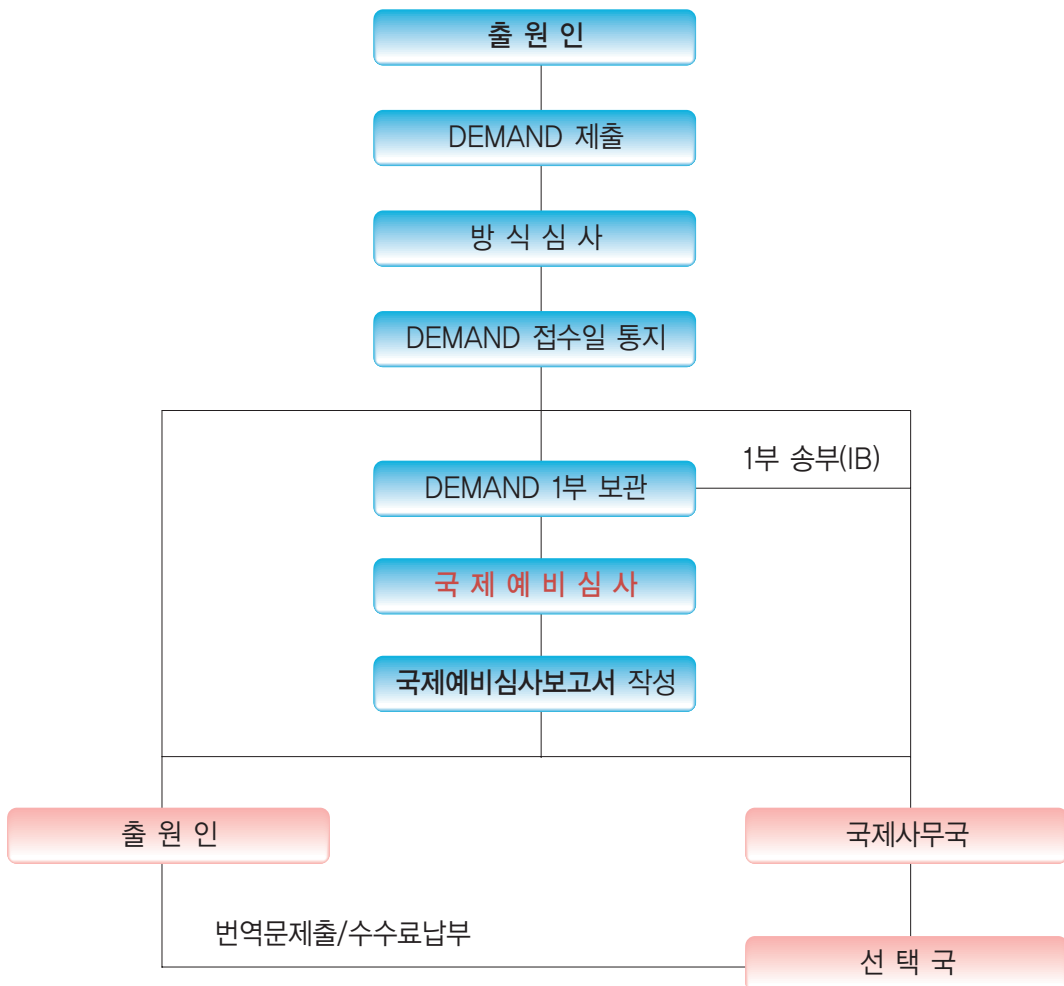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국제
에비심사보고서 한국어로작성

-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 제출 절차 폐지
- 한국어로 공개된 WIPO공보를 검색
- 한국어로 공개공보 등재(www.wipo.int/pctdb)
- 2009년 1월 1일 출원부터 적용

※ 각 개별국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변경 없음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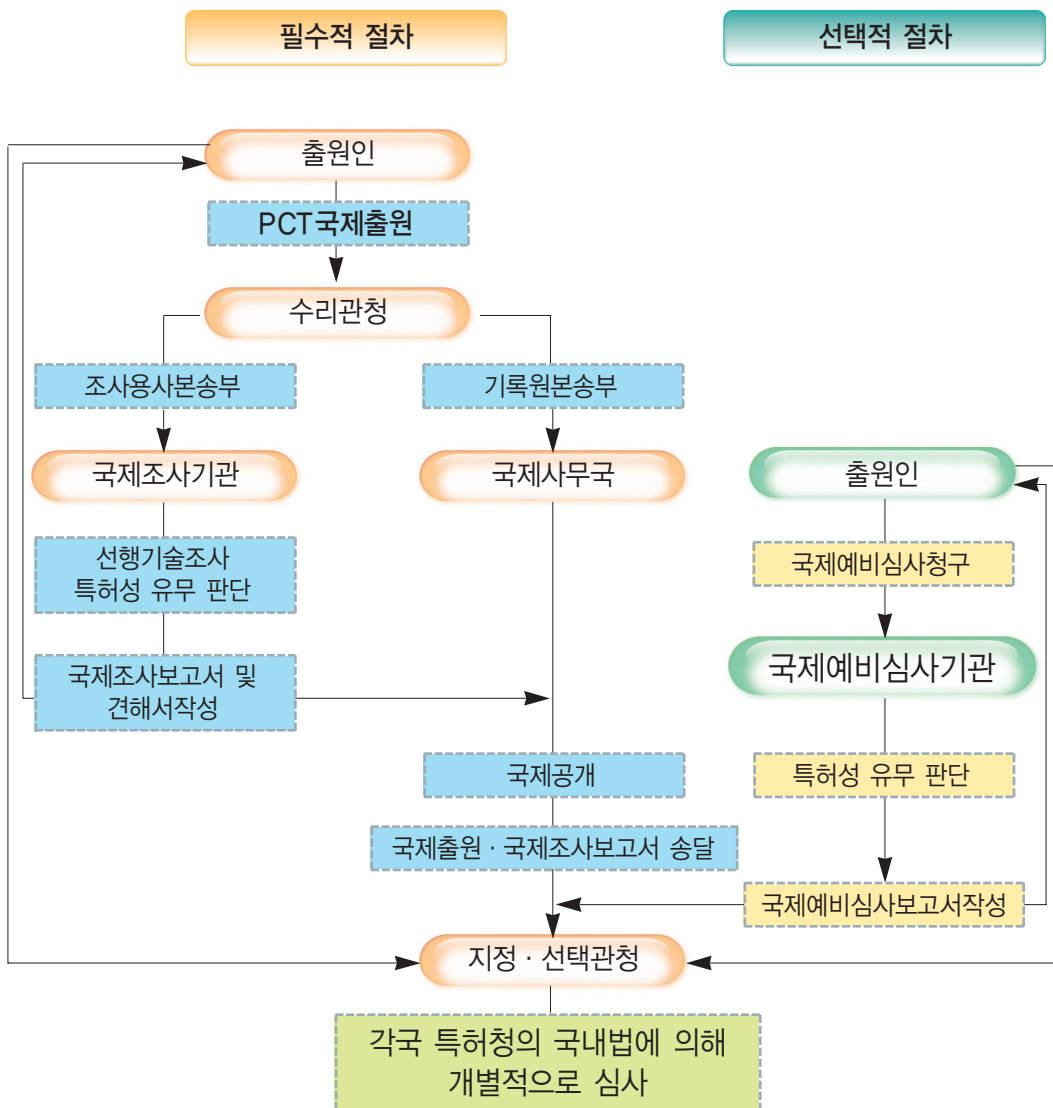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국 제 조 사	국 제 예 비 심 사
목 적	관련 선행기술의 발견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
대 상	모든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
범 위	명세서, 도면에 타당한 고려를 하고 청구 범위를 기초	청구범위 · 명세서 · 도면
판 단 기준일	국제출원일	우선일
연락권	없음	있음
보 정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소정기간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시 전
단일성 결 여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대 상	모든 국제출원(강제적 절차)	임의적, 선택적 절차
관 할	국제조사기관 (ISA)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지 정 선 택	출원서 제출로 출원일의 모든 계약국의 지정을 구성	청구서 제출로 조약 제2장에 구속되는 모든 지정국의 선택을 구성
이 용 가능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즉, 거주지 또는 국적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선택 가능	제2장 규정에 구속된 계약국 거주자 또는 국민이 그러한 계약국 또는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한 경우만 적용
절 차	①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 - 원칙적 불허용 ② 보정 불허용 ③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없음 ④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⑤ 절차의 종료 - 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 작성	①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관리함 ② 보정허용 ③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있음 ④ 단일성불인정 경우에 추가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 ⑤ 절차의 종료 - 보고서 작성
기관의 역할	- 발명의 명칭, 요약서의 점검 작성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이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서 작성	국제출원의 결함의 점검은 국제예비심사의 일환
보 고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각 지정관청에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책임하에 부속서류도 함께 각 선택관청에 송달
국제공개 여부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공개, 견해서는 비공개 (우선일부터 30월경과 후 공지)	전부 비공개(우선일부터 30월 경과 후, 선택 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지)
국내절차 진입기간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2008.10.1. 현재 3개국에 대하여는 2002.4.1. 조약개정이전의 규정 적용)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2008.10.1. 현재 3개국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만료전에 청구되고 해당국을 선택국으로 한 경우)



[PCT 국제출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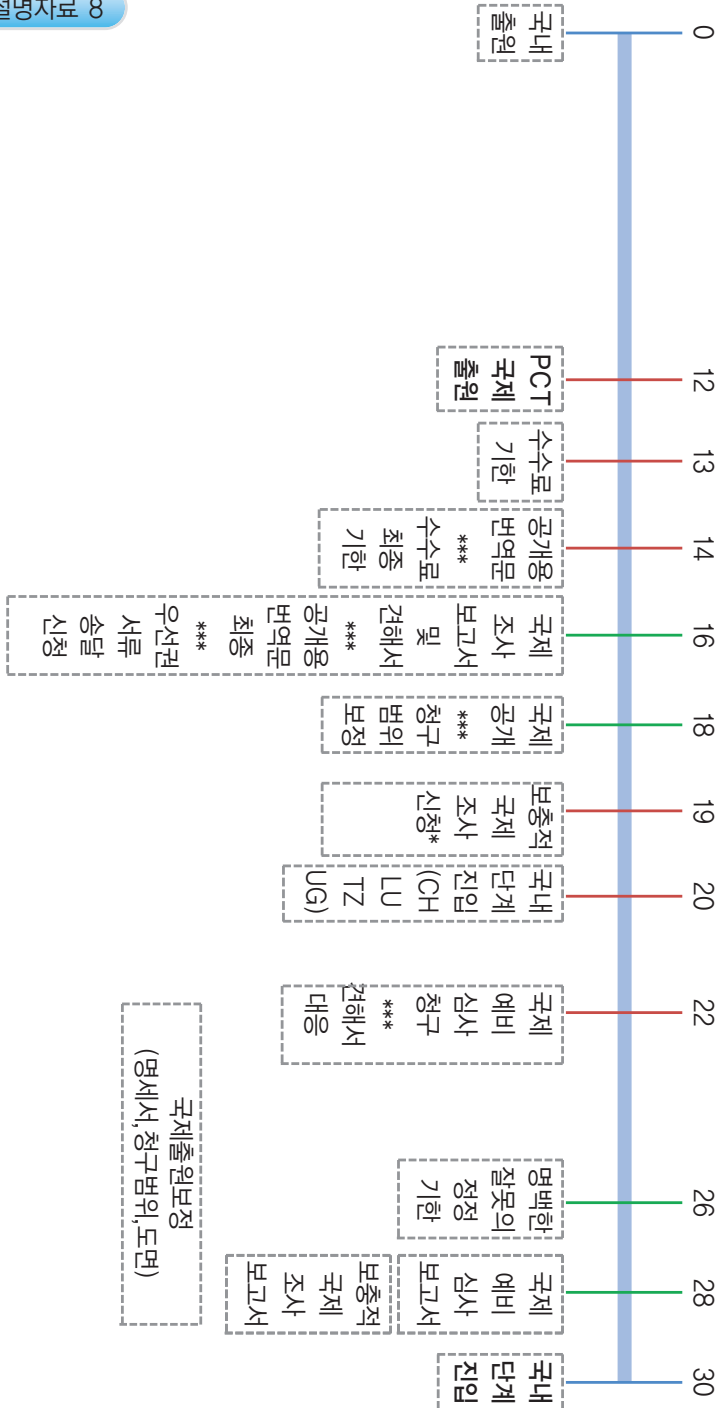




PCT 국제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Timetable)*]

(단위 : 월)



설명자료 8

* 주요 기간별 절차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월' 단위로 표시하여 대표화한 참조 자료임



III

PCT국제출원 등 서류작성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국제출원서류 작성내용 및 요령

- (1) 일반적 사항
- (2) 출원서(Request)
- (3) 명세서(Description)
- (4) 청구범위(Claims)
- (5) 요약서(Abstract)
- (6) 도면(Drawings)
- (7)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2. PCT-SAFE를 이용한 출원

- (1) PCT-SAFE EASY MODE에 의한 출원
- (2)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4. 주요 중간서류 종류 및 작성

- (1)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III PCT국제출원 등 서류작성

1. 국제출원서류 작성내용 및 요령

(1) 일반적 사항

- 가. 용지크기는 A4용지(가로 210mm×세로 297mm)로 한쪽 면만 사용한다.
- 나. 출원서는 타자, 인쇄 또는 컴퓨터로 출력된 것으로서, 사진·정전적 방법(electrostatic processes)·사진오프셋 및 마이크로필름에 의하여 직접 복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다. 계량단위는 미터법, 온도는 섭씨온도로 표시한다.
- 라. 용어 및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서류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사용한다.
- 마. 출원서류는 쉽게 분리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집계 등을 사용한다.
- 바. 출원서의 글자크기는 세로 2.1mm이상으로 하며, 검은색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사. 출원서는 인쇄된 서식⁸⁾ 또는 PCT-SAF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아. 출원서 각 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출원서 첫 쪽을 제외하고 "Sheet No....."에 2부터 기재)

(2) 출원서(Request)⁹⁾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서류참조기호)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12자 범위 내로 기재하며, 12자를 초과하는 문자는 수리관청 등이 직권으로 삭제한다.
- Box No. I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영어기준 2단어 이상 7단어 이내가 바람직하며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과 동일해야 한다.

8) 인쇄서식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쇄서식과 동일한 크기로 작성

9) 한국의 출원서의 경우 각 영문 항목상의 대응항목과 동일하며,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

• Box No. II APPLICANT (출원인)

가. Name and Address (이름과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하며, 주소는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인 경우에는 "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에 X표시를 한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한다(모든 항목 공통)**

나. Telephone No., Facsimile No. 및 Teleprinter No. (전화, 팩스 및 텔렉스번호)
국가코드(한국의 경우 82), 지역코드(서울의 경우 2) 해당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다. State(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국적)

출원인의 국적을 기재하되, 2문자 코드(한국의 경우 KR)로 기재한다. 단, 발명자만(inventor only)일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라. State(that is, country) of residence (거주지국)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기재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존재하는 국가의 국명을 기재한다. 단, 발명자만(inventor only)일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마.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 of~

상기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인지를 해당하는 ☐에 X표시를 하되 한 가지만 표시해야 한다. 이 란의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에 X표시하여 미국에 대한 출원인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상기 출원인은 발명자이어야 한다. 네 번째 ☐에 X표한 경우에는, Supplemental Box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기재하여야 한다.

바.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출원인 코드번호)

출원인 코드번호를 기재한다.

사. E-mail authorization(이메일 사용동의)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적는다. E-mail address는 하나만 적어야 한다.



-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출원인/발명자 추가 기재)**

이 란의 오른쪽 "This person is"란에는 기재된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에 X표 하여야 하며, 그 외는 Box No. II와 기재요령이 같다.

- **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대리인 또는 공동대표자)**

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해당하는 ☐에 X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맨 위에 기재한다.

나.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대리인 코드번호)

대리인 코드번호를 기재한다.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특정 주소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재하고, 마지막 ☐ (Address for correspondence)에 X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E-mail authorization(이메일 사용동의)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 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적는다. E-mail address는 하나만 적어야 한다.

- **Supplemental Box (보충용지)**

이 용지는 기재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선언서 제외) 사용하며, 이 Box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출원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세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출원인 및/ 또는 발명자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Continuation of Box No III"라고 적고, 출원인 성명, 국적, 거주국 등을 Box No. III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② Box No. II 또는 III에서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에 체크한 경우

"Continuation of Box No. II" 또는 "Continuation of Box No III" 또는

"Continuation of Box No. II and III"와 같이 기재하고, 관련 출원인(들) 성명을 기재한 후 지정국을 기재한다.

- ③ Box No. II 또는 III에서 발명자 또는 발명자/출원인이 모든 지정국 또는 미국에 대하여 발명자가 아닌 경우

"Continuation of Box No II" 또는 "Continuation of Box No. III" 또는 "Continuation of Box No. II and III"와 같이 기재하고, 관련 발명자(들) 성명을 기재한 후 관련된 지정국을 기재한다.

- ④ Box No. IV에 기재한 대리인 외에 대리인이 더 있는 경우

"Continuation of Box No. IV"라고 적고, Box No. IV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⑤ 우선권주장이 3개 이상인 경우

"Continuation of Box No. VI"라고 적고, Box No. VI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 ⑥ 특정 지정국에서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관련된 각 지정국의 국명 또는 두문자 코드 및 "patent of addition", "certificate of addition", "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또는 "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의 기재 및 모특허 또는 모권리의 번호를 기재한다.

- ⑦ 미국에서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부분계속출원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continuation" 또는 "continuation-in-part"의 기재 및 모출원의 번호를 기재한다.

• Box No. V DESIGNATIONS (지정)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은 가능한 모든 종류의 보호 및 해당하는 경우 지역 및 국내특허에 대하여 자동으로 국제출원일에 PCT하에서 가능한 모든 지정을 포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 러시아는 해당항목을 체크함으로써 각국의 어떤 종류의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아니한다고 표시할 수 있다. 동 국가들은 국내법상 그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국내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당해 국내 선출원은 동 출원의 취하와 같은 결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있어서 PCT 규칙 4.9(b)가 적용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국가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EP를 위한 DE의 지정이나, EA를 위한



RU의 지정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국내출원이고, 당해 선 국내출원이 취하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KR"의 ☐에 "X"표시 함으로써 지정에서 제외함

• Box No. VI PRIORITY CLAIM (우선권 주장)

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등본(우선권서류)을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 날짜는 서기 및 그레고리력에 의한 일·월·명칭·년을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를 붙인다(예: 04 September 2008(04. 09. 2008)). 한국어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연·월·일을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는 순서로 기재한다(예: 2008년 9월 4일(04. 09. 2008)).

라. 국제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국내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박스 하단에 있는 해당 item의 ☐에 X표시를 하고, 국제출원서 제출시에 “우선권 서류송달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 Box No. VII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조사기관)

가. 국제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의 국명을 2문자 코드로 표시한다.
[예 : 대한민국(KR), 오스트리아(AT), 호주(AU), 일본(JP)]

나. USE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REFERENCE TO THAT SEARCH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적으며 해당항목 ☐안에 X 표시한다.

① 상기 요청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선조사를 행한 기관 또는 관청을 적습니다.

②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이 언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Statement 항목 ☐ 안에 X 표시합니다.

- ③ “Availability of documents”란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에 대하여 각 해당항목 ☐ 안에 X 표시합니다.
- ④ “Transmit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ther documents”란에는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수리관청에서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각 해당항목 ☐안에 X 표시합니다.

• Box No. VIII DECLARATION (선언서)

가. 다섯 개의 선언서 중 한 개라도 작성하여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선언서의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에 X표시를 하고, 오른쪽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매수를 기재한다.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Box No. VIII는 기재하지 않는다.

나. 선언서 기재요령

- 선언서는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국제출원서로서의 결격요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출원서 제출시 첨부한 경우,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시 참고서류로 활용되어 **그에 관한 해당국에서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국제단계에서 제출하여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선언서 작성의 취지라 할 수 있다.
- 선언서는 다음의 기재요령과 같이 반드시 **영어로 된 표준문구(standardized wording)**로 작성되어야 한다.

1) Box No. VIII(i) DECLARATION: IDENTITY OF THE INVENTION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

- 용도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어지며, Box No. II 또는 III에 단지 발명자(inventor only)로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applicant and inventor)로 기재된 경우에는 동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i) and 51bis.1 (a)(i)):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 韓譯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Rules 4.17(i) 및 51bis.1(a)(i)):

동 국제출원[관련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2) Box No. VIII(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

– 용도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ii) and 51bis.1(a)(ii)),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iv)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name) is entitled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by virtue of the following:

- (i) ... (name) of ... (address)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by way of [the][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 (ii)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 (iii)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 (iv)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 (v)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 (vi)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 (vii)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 (viii)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 韓譯

“규칙 4.17(iv)에 의한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Rules 4.17(ii) 및 51bis.1(a)(ii))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 (i) (주소)...의...(성명)은 이 국제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 (ii)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 (iii)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 (iv)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 (v)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 (vi)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 (vii)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 (viii)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동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Box. No. II 또는 III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동일성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입문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Combined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ii) and 51bis.1(a)(ii)) and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i) and 51bis.1(a)(i)),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iv) is not appropriate:"

- 1부로 작성할 경우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원 및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서의 표준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3) Box No. VIII(i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CLAIM PRIORITY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 자격에 관한 선언)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할 경우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specified below,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applicant who filed the earlier application or where the applicant's name has changed since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Rules 4.17(iii) and 51bis.1(a)(iii)):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 (name) is entitled to claim priority of earlier application No. ... by virtue of the following:

- (i) the applicant is the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for which protection was sought by wa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ii) ... (name) [is] [was] entitled as employer of the inventor, ... (inventor's name)
- (iii) an agreement between ... (name) and ... (name), dated ...
- (iv) an assignment from ... (name) to ... (name), dated ...
- (v) consent from ... (name) in favor of ... (name), dated ...
- (vi) a court order, issued by ... (name of court), effecting a transfer from ... (name) to ... (name), dated ...
- (vii) transfer of entitlement from ... (name) to ... (name) by way of ... (specify kind of transfer), dated ...

(viii) the applicant's name changed from ... (name) to ... (name) on ... (date)

※ 韓譯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선출원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Rules 4.17(iii) 및 51bis.1(a)(iii)):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i)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ii) ...(성명)은 ...(발명자 성명)발명자의 고용주로서 자격이 있다.

(iii)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iv)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v)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터 동의

(vi)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정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령

(vii)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의해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양도

(viii)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 동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 동 선언서는 우선권이 주장된 선출원을 한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이 후출원 출원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된다.(예를 들면, 다섯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그 중 한명이 선출원에 기재된 출원인과 다른 경우)

4) Box No. VIII(iv) DECLARATION: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지정을 위한 발명자에 관한 선언)

- 용도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선언서이다.



- 표준문구

동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다.

- 기재요령

- 비록 모든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시민권 등과 같은 서지적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동 선언서를 사용하되, 제목은 "Supplemental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 4.17(iv) and 51bis.1(a)(iv))"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Box No. VIII(v) DECLARATION: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

- 용도

신규성 의제(擬制)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사용한다.

- 표준문구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Rules 4.17(v) and 51bis.1(a)(v)):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No.PCT/...],

...(name) declares that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the]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disclosed as follows:

(i) kind of disclosure (*include as applicable*):

(a) international exhibition

(b) publication

(c) abuse

(d) other: ... (*specify*)

(ii) date of disclosure: ...

(iii) titl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iv) place of disclosure (*if applicable*): ...

※ 韓譯

“권리훼손이 없는 공개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규칙 4.17(v) 및 51bis.1(a)(v)) :

동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동 국제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의 대상기술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음을 선언한다:

- (i) 공개의 종류(해당하는 경우 포함)
 - (a) 국제박람회
 - (b) 공개
 -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 (d) 기타 : ...(기재)
- (ii) 공개일 : ...
- (iii) 공개의 명칭(있는 경우): ...
- (iv) 공개 장소(있는 경우): ...

- 기재요령

-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항목 (iii)과 (iv)는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할 수 있다.

6) Continuation of Box No. VIII(i) to (v) DECLARATION (선언서 보충용지)

- Box No. VIII (i)부터 (v)까지 선언서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한다.

• **Box No. IX CHECK LIST; LANGUAGE OF FILING (체크리스트)**

- 가.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에 X표 한다.
- 나. 국제공개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대표되는 **도면의 번호**를 기재한다.
- 다. 국제출원언어를 기재한다(출원서가 아닌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기재함에 유의).
- 라. Box No. IX의 왼쪽 하단 (b) 또는 (c)는 기입하지 않는다.
- 마. 서열목록을 제출한 경우 기재사항은 왼쪽 상단 (a)의 sequence listing part of



description의 오른쪽에 출원매수를 기재하고, Box No. IX 오른쪽 9.와 9(i) 앞에 있는 □에 각각 X표시를 한다.

- **Box No. X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REPRESENTATIVE**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타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날인(2009. 1. 1부터 날인대신 서명 가능)한다.

- **FEE CALCULATION SHEET (Annex to the Request)**

가.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란에는 Request 첫 쪽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나. "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출원인을 기재한 후 "et al.(한국어의 경우 “등”)"을 기재한다.

다. 수수료의 기재방법

① T에 송달료를 기재한다.

② S에 조사료를 기입하고, 아래 밑줄에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을 기재한다.

③ 국제출원료

– "Total number of sheets"에 총매수를 기재하고, i1에 30매까지 국제출원료 금액을, i2에 30매 초과매수와 초과 1매당 추가 금액을 기재하고, I에는 i1과 i2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i3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우선권서류에 관한 요금은 기재하지 않는다.

⑤ 수수료 합계(TOTAL)에는 T, S, 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한다.

라. MODE OF PAYMENT(지불형태)는 CASH에 X표시를 한다.

[PCT국제출원수수료(2009. 1. 1. 기준)]

■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27,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5,000		
조 사 료	한 국	한국어	450,000		
		영어	900,000		
	오스트리아		306,000		
	호 주		1,590,000		
	일 본		1,331,000		
송달료		45,000			

1.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2.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100,000원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CD-R)로 제출시 : 299,000원

■ 우선권서류 수수료

종 류	금 액	납부시기	제출서류
우선권서류송달 신청시*	없음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 제출시*	없음	우선권서류 제출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출원인은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서류를 제출



PCT국제출원가이드

■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 심사기관	납부액(원)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출원서비스 담당관실 우) 302-701
	취급료		
오스 트리아	심사료	송금은행 : Österreichische Posts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일 본	심사료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좌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1.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2.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송금)하여야 함
3.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4. 재외기관 연락처
 - 1) 오스트리아(AT)
 - 전화 : (43-1) 53424-0
 - 팩스 : (43-1) 53424-200
 - 2) 일본(JP)
 - 전화 : (81-3) 3592-1308
 - 팩스 : (81-3) 3501-0659/6803

■ 참조사항

1.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민원서식(Quick Link) → 분야별 서식 → 출원, 심판 → PCT국제출원
2.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PCT홈페이지(www.pct.kr))하여야 함

(3) 명세서(Description)

• 일반적 사항

가. 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용지의 상단 : 20mm 이상 40mm 이내
- 용지의 좌단 : 25mm 이상 40mm 이내
- 용지의 하단 및 우단 : 20mm 이상 30mm 이내

나.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각 용지 좌측 오른쪽에 5행마다 아라비아숫자로 연속번호를 붙인다.

라. 명세서에는 Request(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제목을 붙이고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Technical Field(기술분야)

발명의 관련 기술분야를 명시

② Background Art(배경기술)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가능한 한 당해 기술에 관한 문헌을 인용

③ Disclosure of Invention(발명의 개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방법이 이해되도록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기술하고 그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가지는 유리한 효과를 기재

④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

⑤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발명의 최선의 실시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중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형태를 기재하되 적당한 경우에는 실시예를 이용하고 도면이 있을 때에는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

⑥ Industrial Applicability(산업상 이용가능성)

필요한 경우에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명시

⑦ Sequence Listing(서열목록)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첨부한다(*아래 (7)에서 별도 안내).

해당하는 경우 조약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작성



⑧ Sequence Listing Free Text(서열목록 프리텍스트)

해당하는 경우 명세서를 작성한 언어로 기재한다.

마. 명세서에는 화학식 또는 수식을 기재하거나 표를 사용할 수 있다.

바. 화학식, 수식 또는 표를 바르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지를 가로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용지를 가로로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지는 화학식·수식 또는 표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이 되도록 세로로 하여 절한다.

(4) 청구범위(Claims)

가.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명세서의 최후 용지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중앙에 붙인다.

나. “Claims(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간결하게 기재하되,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청구항의 수는 발명의 성질을 고려하여 타당한 수로 하고, 청구항의 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청구항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라. 청구범위에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명세서의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또는 “도면의 …에 표시한 것과 같이”와 같은 기재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기술적 특징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 다음에 관련 도면의 인용부호를 묶어 병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종속항의 기재요령

- ① 1 또는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함과 동시에 추가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다.
- ②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하 “다수종속항”이라 한다)은 인용되는 청구항을 선택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다.(예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 ③ 다수종속항은 다른 다수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다.
- ④ 같은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은 가능한 한 인용되는 청구항 바로 뒤에 모아서 기재한다.
- ⑤ 상기 ②, ③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가 지정국의 국내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5) 요약서(Abstract)

- 가.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청구의 범위의 최후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인다.
- 나. Abstract(요약서)에는 그 요약서에 관한 국제출원을 선행기술로서 조사할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①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 ②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 ③ 기술적 과제의 해결방법의 요지
 - ④ 발명의 중요한 용도
- 다. 요약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재하되, 영어로 50단어 이상 150단어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중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인용부호를 붙인다.
- 마. 요약서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 또는 용도에 관하여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6) 도면(Drawings)

- 가. 일반적 사항
- ①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 및 좌단에 25mm, 우단에 15mm, 하단에 10mm를 둔다.
 - ② 도면의 각 용지에는 번호를 붙인다. 번호는 사선으로 구분된 2개의 아라비아숫자로 이루어지며, 사선으로 구분된 좌측에는 용지의 번호를, 우측에는 용지의 합계수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중앙에 표시한다.
- 나. 도면에는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물’ · ‘증기’ · ‘개’ · ‘폐’ · ‘AB의 절단면’ 등의 단어 또는 어구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다. 도면은 지워지지 않는 짙은 **흑색**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선명한 선으로 착색 없이 작성한다.
- 라. 절단면은 평행사선으로 표시하되, 인용부호 및 인출선의 판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시한다.



- 마. 도면의 3분의2 선축적에 의한 사진복제를 한 경우에도 모든 세부가 쉽게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명료성을 가지도록 작성한다.
- 바. 도면의 척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식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 사. 도면에 기재하는 모든 숫자·문자 및 인출선은 간결하고 명확한 것으로 한다.
- 아. 도면 중의 모든 선은 원칙적으로 제도용구를 사용하여 긋는다.
- 자. 도면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 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그려야 한다.
- 차.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세로 3.2mm 이상으로 한다.
- 카. 2 이상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도면별로 용지의 번호와는 관계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 타. 도면에는 명세서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부호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파. 도면에 다수의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용부호와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목록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 가. 서열목록은 명세서와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하여 출원서류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다음)에 배치한다.
- 나. 서열목록은 반드시 서열목록 작성기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자출원의 경우 작성된 서열목록을 PCT-SAFE상에 첨부하면 배치 및 페이지 부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작성된 서열목록을 가.에서 설명한 위치에 출원서류의 일부로 첨부하고 작성된 서열목록을 담은 전자매체(디스켓 1부)를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통상의 워드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다. 서열목록에는 앞서의 출원서, 명세서 등과 별도로 서열목록만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용지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PCT-SAFE를 이용한 출원

(1) PCT-SAFE EASY MODE에 의한 출원

가. 개 요

PCT-SAFE EASY MODE는 출원서 및 요약서를 전자적 양식으로 작성·제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작·보급하고 있다. PCT-SAFE EASY MODE를 사용하여 작성한 출원서 및 요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 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준다.

나. 작성 및 제출

PCT-SAFE EASY MODE에 의해 작성된 출력물(Request)에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고, 반드시 동 Request 및 요약서가 수록된 FD(FD에 .zip 파일과 .log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 때 원본은 서면이며, FD 미제출시에는 감면혜택이 없음).

※ PCT-SAFE에 의한 출원서 작성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특허路」 -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PCT) 전자출원 교육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PCT-SAFE에 의한 전자출원

가. 개 요

PCT-SAFE(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는 PCT국제출원의 전자출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기존의 PCT-EASY의 연장선상에서 WIPO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다. PCT국제출원이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300 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 작성 및 제출

PCT-SAFE에 의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특허路」 -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PCT) 전자출원 교육자료에 안내되어 있다. PCT-SAFE를 이용하여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작성된 CD-R을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 제출서”와 함께 제출한다.



3.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작성내용 및 요령

가. IPEA/.....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표시

- 출원인은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선택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페이지의 상단에 당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명칭 또는 두문자 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Box No. II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표기할 수 있다. 라틴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길이 12자를 초과할 수 없다.
-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 국제예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출원 번호를 기재한다(예 : PCT/KR2003/001234).
- International filing date(day/month/year) : 국제출원일의 표시
- (Earliest)Priority date(day/month/year) : 우선일의 표시
- Title of invention :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발명을 명칭을 기재하되, 다만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새로운 발명의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 Box No. II APPLICANT(S)

-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은 모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한다.
 - "applicant only"뿐 아니라, "applicant and inventor"도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 Name and address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바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에 수리관청에 성명(명칭), 주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한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를 하여야 한다(모든 항목 공통).**
 - 출원인이 3인 이상인 경우 Box No. II 하단의 네모 체크박스(☐ 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에 체크(×)하고, Continuation Sheet를 사용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 State(that is, country)of nationality/State(that is, country)of residence
 -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을 두문자 코드(예: KR)로 기재한다.
- Telephone No./Facsimile No./Teleprinter No.
 - 국가코드 및 지역번호도 함께 기재한다.
(예: 한국, 서울의 경우 +82-2-568-8155).
- Applicant's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Office
 - 출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을 경우, 출원인코드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라. Box No. III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 The following person i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agent, 모든 출원인을 대표하여 선임된 일반대표자인 경우 common representative에 표시하고, 각 경우에 따라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한다.
- Name and address/Telephone No./Teleprinter No./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 Box No. IIAPPLICANT(S) 란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해당 대리인 사항을 기재한다.
- Address for correspondence
 - 대리인 또는 일반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으며, Box No. II APPLICANT(S) 란의 출원인 주소와 달리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통신을 위하여 별도의 주소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마. Box No. IV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 국제예비심사의 기초가 되는 보정에 관한 사항과 예비심사언어를 표시한다.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보정)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무엇에 기초하여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국제출원 당시의 원출원에 기초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에만 표시하면 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시 보정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면 된다.
- 조약 19조 보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기초로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동 보정서의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The applicant wishes any amendment to the claims under Article 19 to be considered as reversed : 동 사항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조약 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에 의하여 당해 19조 보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체크한다.
- Where the IPEA wishes to start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international search in accordance with Rule 69.1(b), the applicant requests the IPEA to postpone the start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time limit under Rule 69.1(d)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동 보정서 제출 가능성을 열어 놓기를 원할 경우 이 체크박스에 표시하여 국제예비심사 개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한다.
- The applicant expressly wish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to start earlier than at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time limit under Rule 54bis.1(a) : 출원인이 Rule 54bis.1(a)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Languag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를 기재한다. 한국특허청(IPEA/KR)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기 점선부분에 국제예비심사 언어로 영어(English)를 기재하고, 체크박스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한다.

바. Box No. V ELECTION OF STATES

-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한다.

사. Box No. VI CHECK LIST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첨부 서류의 쪽 수 표시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하고 Box No. IV에 기재한 바의 국제예비심사언어로 기재된 서류의 목록별 분량(쪽 수)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란이다.
 - 제출되는 서류의 매수를 정확히 기재한다.
- 첨부서류
 - 첨부되는 서류명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Fee calculation sheet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이 용지를 Demand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아. Box No. VII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 (2009. 1. 1부터 날인대신 서명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 중 최소 1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누락된 기명날인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자. FEE CALCULATION SHEET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및 International application No.란은 Demand 첫 쪽의 각 해당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 1인 및 "et al."을 기재한다.
- 수수료의 기재 : Box P에는 예비심사료 금액을 기재하고, Box H에는 취급료 금액을 기재한다.
- Total Box에는 Box P 및 Box H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 Mode of Payment에는 납부방법을 기재하되, 한국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cash"항목 앞에 체크표시 한다.

※ 수수료납부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납부서에 부여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해당 금액을 접수일 익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익일까지 미납부시 다시 새로운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새로운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4. 주요 중간서류¹⁰⁾ 종류 및 작성

(1) 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별지서식 ¹¹⁾	서식명
별지 제35호서식	서류제출서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의견(소명)제출서
별지 제41호서식	REQUEST
별지 제41호의2서식	출원서
별지 제42호서식	特許協力條約に基づく國際出願
별지 제43호서식	명세서(DESCRIPTION, 明細書)
별지 제44호서식	청구의 범위(CLAIMS, 請求の範圍)
별지 제45호서식	도면(DRAWINGS, 圖面)
별지 제46호서식	요약서(ABSTRACT, 要約書)
별지 제47호서식	수수료납부서
별지 제48호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취하서
별지 제50호서식	추가수수료납부 · 이의신청료납부 · 청구범위감축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DEMAND
별지 제51호의2서식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별지 제52호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 각종 서류는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민원서식」
-「분야별서식」-「출원 · 심판」-「PCT국제출원」에서 찾을 수 있다.

10) 중간서류란 출원이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일컫는 표현

11) 2007.7.1.자로 특허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이 전면 개정됨. 유사한 성격의 서식을 통합하여 서류가 통합되고, 일부 서류를 제외한 외국어 서식이 폐지되는 등 서류의 종류가 간소화됨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가. 대리인의 선임

- 국제출원 후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포괄위임장의 제출

- 국제출원을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작성한 후 포괄위임장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여 포괄위임 사실을 등록한다.
-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후(또는 동시에) 국제출원을 할 경우
기 등록된 포괄위임장 사본을 국제출원서 3부에 각각 첨부한다.

다. 성명 등의 변경신고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 또는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명의변경의 신고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체용지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관청, 명세서·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 명세서·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신청서는 우선일부터 26월 이내에 관할 관청 또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2007.4.1. 이후 국제출원부터 적용).

바.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 계산 용지(Fee calculation sheet)’ 3부를 첨부(출원과 동시에 요금납부 시에는 출원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후 그 총액(Total) 금액을 당해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납부한다.



사.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수수료 납부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 수리관청은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한다(Form PCT/RO/133).
- 이에 대해 출원인은 당해 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하여 ‘수수료 계산용지 (Fee calculation sheet)’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당해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한다.
-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아. 우선권서류의 제출

-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되어 있는 국내출원인 경우, **출원서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 의사를 표시(제7기재란, Box No. VII)하거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작성(‘우선권서류송달’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한다.
- 국외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우선권서류제출’ 항목을 선택)를 작성하고 해당 우선권서류 각1부를 첨부하여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 **자진보정**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로부터 16개월과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로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조기 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상기 기간내에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통지에 의한 보정**(수리관청에서 우선권주장의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취지를 선언한다.

차. 국제출원 등의 취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취하서’를 제출한다.

카.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

-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서류제출서’에 국제공개용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동 번역문의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출원시의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 ※ 주의 : Request 및 명세서(영어로 기재 또는 병기된 경우에 한함)에 있는 『발명의 명칭』과 국제공개용번역문의 『발명의 명칭』은 일치해야 하며, 요약서는 영문 기준 50-15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상기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료와 함께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통지받게 되며,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서류제출서’에 가산료를 기재한 후 국제공개용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출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가산료를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2009.1.1 이후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타. 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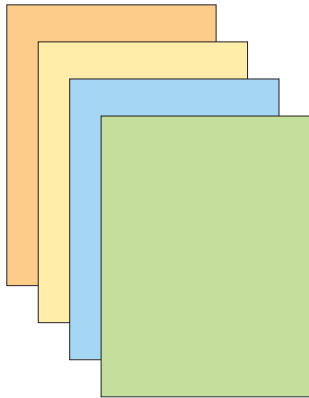
- 제출시기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제출시, 심사관의 견해서 수령 후, 또는 출원인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28월)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 제출한다.
- 보정의 범위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에 대하여 보정이 가능하며, 국제출원시의 원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정에 의한 대체용지(2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서한(1부)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한국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동 보정은 국제공개언어인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2008. 12. 31.까지의 출원에 대하여는 한국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동 보정은 국제공개언어인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009.1.1. 이후의 출원에 대하여는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언어, 즉, 한국어 출원인 경우 한국어, 영어출원인 경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12) 설명자료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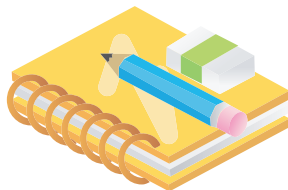


설명자료 9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등 보정시 제출서류]



- 보정서** : 별지 제39호 서식
(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 등 보정 선택;
제출기관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
- 서한** : 대체되는 용지와 대체용지 사이의 차이점
및 보정의 이유를 설명
- 대체용지** : 보정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되는 용지
전체에 대하여 대체용지를 제출
- 필요한 경우 위임장**





IV PCT국제출원 지원제도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해외출원 비용보조 제도

- (1) 사업목적
- (2) 보조금 지원

2. 해외출원 비용보조관련 연락처

3. PCT국제출원절차 지원업무관련 연락처



IV PCT국제출원 지원제도¹³⁾

1. 신청자격

-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이 해외출원국가의 국내출원 단계의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2008년 신청일 기준 해외출원비용 송금일자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해외출원

2. 신청시기 및 비용지원범위

- 최초 신청자격은 해외출원국가의 출원비용을 송금한 이후에 가능하며,
- 해외출원비용 지원범위는 PCT국제출원단계의 비용과 개별국 국내단계 비용 및 심사단계의 비용, 즉 등록 전단계까지의 모든 비용을 출원비용으로 인정하며,
- 1건당 지원한도(500, 700만원)에 맞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개별국 국내단계의 출원비용송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 발생비용과 5년 이후까지 발생한 등록 전단계까지의 출원비용을 신청함

3. 지원금액

-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고도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선정 심의회의결과 선정기술의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등급별로 차등지원

4. 지원건수한도 및 기타사항

- 지원건수 :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5건(5개국)이내
- PCT국제출원단계의 비용 : 국내변리사 수입료+PCT출원수수료+번역료+기타비용 등
- 개별국 국내단계의 출원 및 심사비용 : 국내외변리사 수입료+출원국별 특허청 출원료+심사청구료+우선권주장료+출원유지료+출원인변경수수료+중간사건처리비용(각 차수별 보정료) 등
- PCT를 통한 해외출원인 경우, 국제단계를 거쳐 해외출원 지정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였을 경우에 국제단계의 공통비용을 지정국수로 나누어 개별국 출원비용에 합산한 금액을 소급하여 신청함

13) 해외출원 비용보조 제도(2008년 하반기 기준)

5.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연중수시)→IPC분류→기술성 평가(특허청)→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보조금 지급

나. 심의기준(신청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등록가능성, 우수성 및 활용성 위주로 평가)

-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 특허기술의 활용성(실용화 가능성, 상품의 시장성, 기술의 확산성)
-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독창성, 기능성 등)

6. 접수시 유의사항

- 가.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것은 신청 불가하고,
- 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의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신청 불가하며,
- 다. 구비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라.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등록 및 거절결정 등의 등록사항 관련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사항을 한국발명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 마.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시 해외등록기술은 우대지원하고,
- 바. 2008년 1차 또는 2차에 신청하여 탈락된 건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만 재작성하여 신청가능함(1차 또는 2차의 구비서류를 이관하여 대체함)

7. 문의처 및 신청서식 안내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해외출원비용지원담당자)
- 전화 : 02-3459-2846, 팩스 : 02-3459-2858





8. PCT국제출원절차 지원업무관련 연락처

(1) 특허청(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관청)

- 홈페이지 : <http://www.pct.go.kr>, <http://www.kipo.go.kr>
- 팩 스 : 042-472-7140
- 전 화 :

관련 분류		전화번호
국제출원 준비단계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
서식작성 및 서식작성기 이용		
전자출원		
국제출원 후 처리과정 및 방식 심사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042-481) 5208/5207/8552/5281/5762/5131
	지정관청	042-481-5202/5254/5199/5230
실체심사(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		해당 서류(보고서)에 기재된 심사관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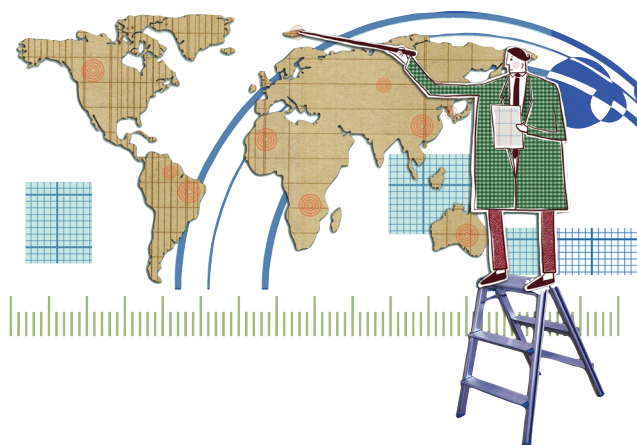
(2) PCT 국제출원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 관	역 할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 특허청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1)특허청 정보 참조	(042) 472-7140
	지정(선택) 관청			
WIPO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	34, chemin des Colombettes, Geneva, Switzerland	(41-22) 338-8338	(41-22) 338-8270
	수리관청			(41-22) 910-0610
오스트리아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Dresdner StraÙ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43-1) 53424-0	(43-1) 53424-200
일본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81-3) 3592-1308	(81-3) 3592-0659, 6803
호주 특허청	국제조사기관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61-2) 6283-2999	(61-2) 6283-7999

(3) PCT관련 질의에 대한 WIPO 헬프데스크 정보

■ PCT 안내	전화 : 41 22 338 83 38 팩스 : 41 22 338 83 39 이메일 : pct.infoline@wipo.int
■ PCT 절차 (IB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공개 오류연락 포함)	전화 : 41 22 338 94 79 팩스 : 41 22 338 82 70
■ RO/IB (IB에 국제출원한 경우)	전화 : 41 22 338 92 22 팩스 : 41 22 910 06 10
■ PCT 간행물 관련	전화 : 41 22 338 96 18 팩스 : 41 22 740 18 12
■ 간행물 주문 (인터넷)	이메일 : publications.mail@wipo.int
■ WIPO 교환번호	전화 : 41 22 338 91 11
■ PCT관련 WIPO 사이트	http://www.wipo.int/pct/en/
■ PCT-SAFE 관련 사이트	http://www.wipo.int/pct-safe
■ RO/KR 출원 (PT12)	전화 : 41 22 338 7412 팩스 : 41 22 338 7090 이메일 : pt12.pct@wipo.int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출원가이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참 고 자 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PCT 체약국 현황 목록
- PCT 체약국 현황
- 공개된 PCT 국제출원 확인 및 검색
- 국내단계 진입기간 일람표
- PCT 국제출원 서식(Request)
- PCT 국제예비심사청구 서식(Demand)
- PCT 국제출원관련 주요 통계(2007년, WIPO PCT연보)



• PCT 계약국 현황 목록(2008. 12. 1. 현재, 139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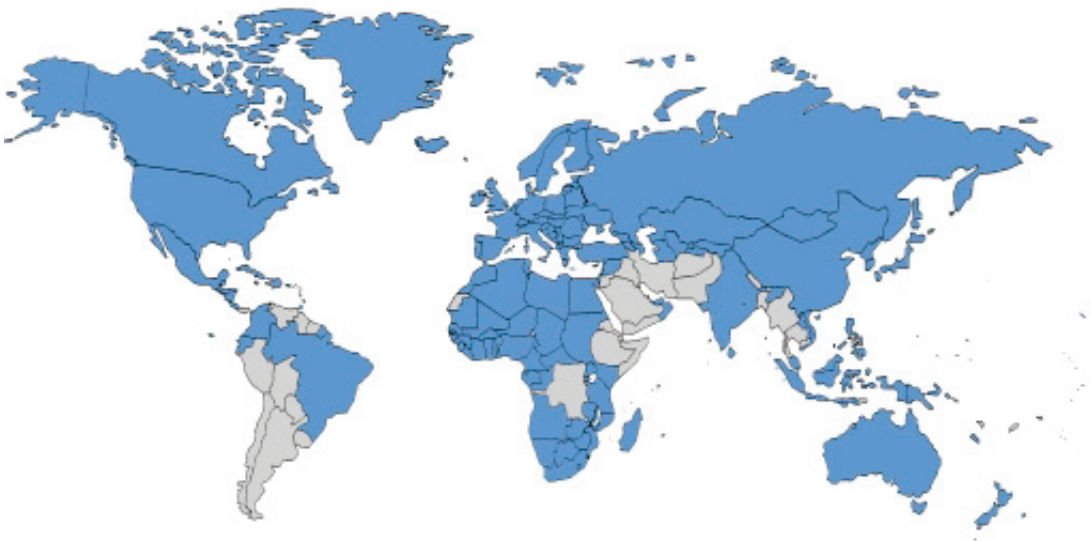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o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Sao Tome and Principe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Zambia
Zimbabwe

• PCT 계약국 현황(2008. 12. 1. 현재, 139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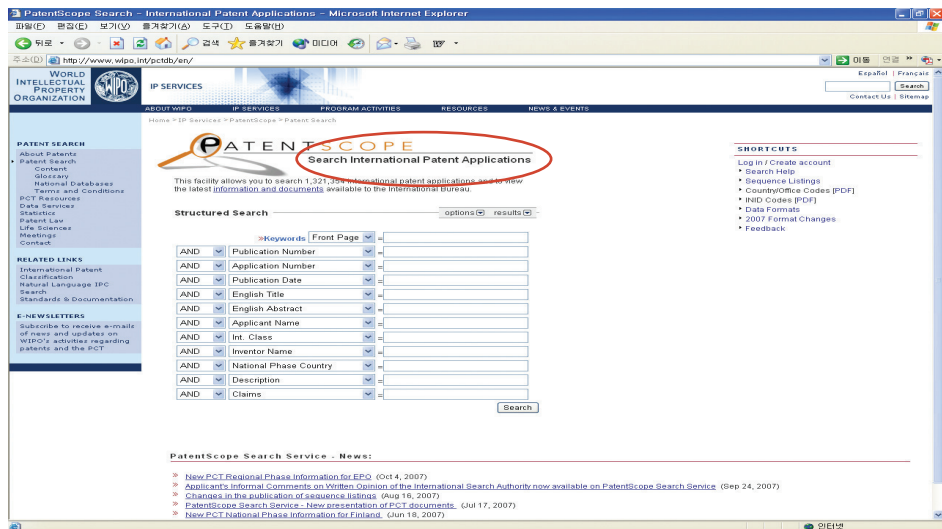


AE United Arab Emirates	CR Costa Rica	IL Israel	ME Montenegro	SG Singapore
AG Antigua and Barbuda	CU Cuba	IN India	MG Madagascar	SI Slovenia (EP) ²
AL Albania ¹	CY Cyprus (EP) ²	IS Iceland (EP)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¹	SK Slovakia (EP)
AM Armenia (EA)	CZ Czech Republic (EP)	IT Italy (EP) ²	ML Mali (OA) ²	SL Sierra Leone (AP)
AO Angola (from 27 December 2007)	DE Germany (EP)	JP Japan	MN Mongolia	SM San Marino
AT Austria (EP)	DK Denmark (EP)	KE Kenya (AP)	MR Mauritania (OA) ²	SN Senegal (OA) ²
AU Australia	DM Dominica	KG Kyrgyzstan (EA)	MT Malta (EP) ²	SV El Salvador
AZ Azerbaijan (EA)	DO Dominican Republic	KM Comoros	MW Malawi (AP)	SY Syrian Arab Republic
BA Bosnia and Herzegovina ¹	DZ Algeria	KN Saint Kitts and Nevis	MX Mexico	SZ Swaziland (AP) ²
BB Barbados	EG Egypt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Y Malaysia	TD Chad (OA) ²
BE Belgium (EP) ²	ES Spain (EP)	KR Republic of Korea	MZ Mozambique (AP)	TG Togo (OA) ²
BF Burkina Faso (OA) ²	FI Finland (EP)	KZ Kazakhstan (EA)	NA Namibia (AP)	TJ Tajikistan (EA)
BG Bulgaria (EP)	FR France (EP) ²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E Niger (OA) ²	TM Turkmenistan (EA)
BH Bahrain	GA Gabon (OA) ²	LC Saint Lucia	NG Nigeria	TN Tunisia
BJ Benin (OA) ²	GB United Kingdom (EP)	LI Liechtenstein (EP)	NI Nicaragua	TR Turkey (EP)
BR Brazil	GD Grenada	LK Sri Lanka	NL Netherlands (EP) ²	TT Trinidad and Tobago
BW Botswana (AP)	GE Georgia	LR Liberia	NO Norway	TZ United Republic of Tanzania (AP)
BY Belarus (EA)	GH Ghana (AP)	LS Lesotho (AP)	NZ New Zealand	UA Ukraine
BZ Belize	GM Gambia (AP)	LT Lithuania (EP)	OM Oman	UG Uganda (AP)
CA Canada	GN Guinea (OA) ²	LU Luxembourg (EP)	PG Papua New Guinea	US United States of America
CF Central African Republic (OA) ²	GQ Equatorial Guinea (OA) ²	LV Latvia (EP) ²	PH Philippines	UZ Uzbekistan
CG Congo (OA) ²	GR Greece (EP) ²	LY Libyan Arab Jamahiriya	PL Poland (EP)	VC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CH Switzerland (EP)	GT Guatemala	MA Morocco	PT Portugal (EP)	VN Viet Nam
CI Côte d'Ivoire (OA) ²	GW Guinea-Bissau (OA) ²	MC Monaco (EP) ²	RO Romania (EP)	ZA South Africa
CM Cameroon (OA) ²	HN Honduras	MD Moldova (EA)	RS Serbia ¹	ZM Zambia (AP)
CN China	HR Croatia ¹		RU Russian Federation (EA)	ZW Zimbabwe (AP)
CO Colombia	HU Hungary (EP)		SC Seychelles	
	ID Indonesia		SD Sudan (AP)	
	IE Ireland (EP) ²		SE Sweden (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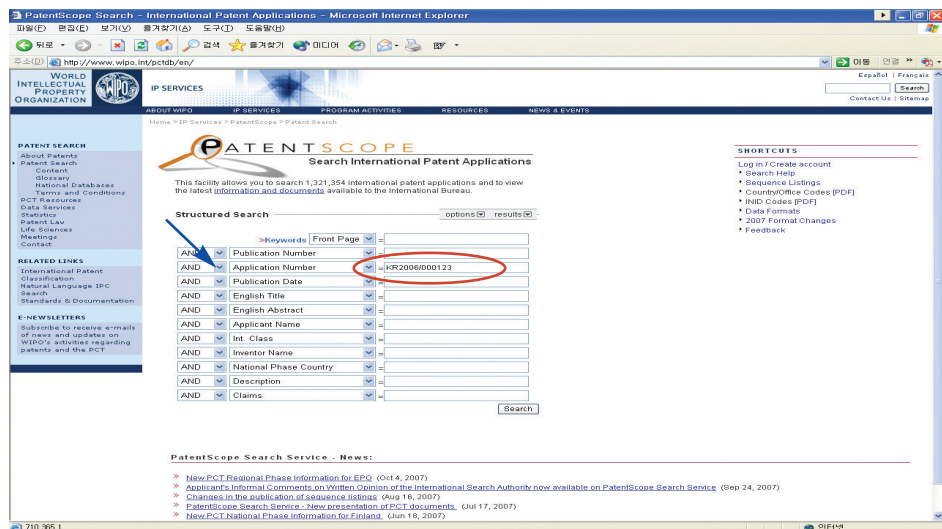
• 공개된 PCT 국제출원의 확인 및 검색

2006. 4. 1. 이후 모든 PCT 국제출원은 전자적으로 공개되며, 특정 국제출원이 공개된 경우 국제사무국에서는 출원인에게 공개사실, 공개일자, 검색사이트 등 관련정보를 통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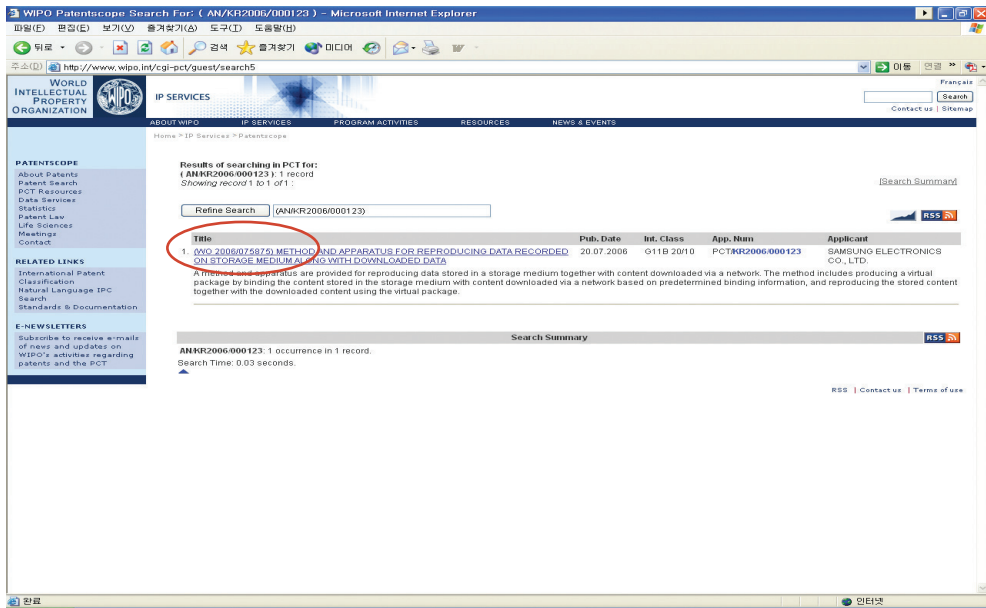
1. 사이트 주소: <http://www.wipo.int/pctd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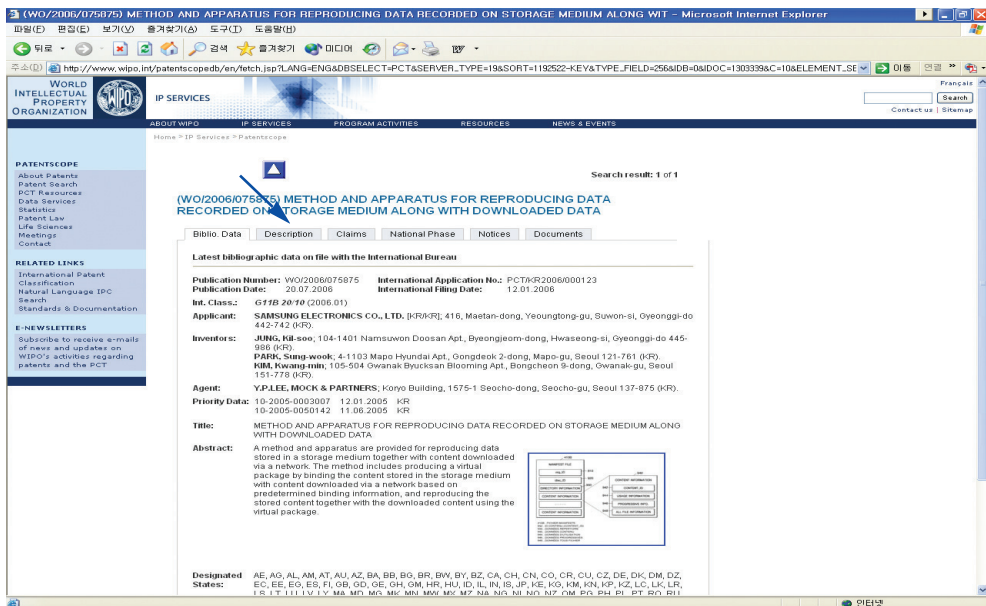
2. 국제출원번호 입력(Application Number 항목)



3. 서지사항 등 기본 정보 확인(WO는 국제공개번호를 나타냄)



* 확인하고자 하는 해당 탭을 클릭



4. 서류 전체 현황 확인(Documents탭을 클릭)

Search result: 1 of 1

(WO/2006/075875) METHOD AND APPARATUS FOR REPRODUCING DATA RECORDED ON STORAGE MEDIUM ALONG WITH DOWNLOADED DATA

Biblio. Data | Description | Claims | National Phase | Notices | Documents

Publis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Date	Title	view	download
20.07.2006	Initial Publication with ISR (A1 29/2006)	view	download

Download options for Initial Publication with ISR (A1 29/2006):

- PDF (32 pages)
- ZIP (XML + 32 TIFFs)
- XML

Related Documents on file at the International Bureau (more information)

Date	Title	view	download
17.07.2007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Chapter 1 (QP1P1)	view	download
12.07.2007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WOISA)	view	download
29.03.2007	Notification of the Recording of a Change (B306)	view	download
20.07.2006	KR 10-2005-0003007 12.01.2005 (Pr. Doc.)	view	download
20.07.2006	KR 10-2005-0050142 11.06.2005 (Pr. Doc.)	view	download
20.07.2006	Notification Concerning Submission or Transmittal of Priority Document (B304)	view	download

5. 통지사항 또는 국내단계 진입현황 확인

국내단계진입현황은 WIPO에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 정보임(2008. 12. 현재 한국특허청을 포함하여 33개국이 동 정보를 WIPO에 제공)

Search result: 1 of 1

(WO/2006/075875) METHOD AND APPARATUS FOR REPRODUCING DATA RECORDED ON STORAGE MEDIUM ALONG WITH DOWNLOADED DATA

Biblio. Data | Description | Claims | National Phase | Notices | Documents

Available information on National Phase entries (more information)

Office Code	National Entry Date	National Reference Number	Status
EP	14.06.2007	2006700079	Published: 26.09.2007

• 국내단계 진입기간 일람표(2008. 12. 1. 현재)

(단위: 월, 기산시점: 우선일)

Time Limits for Entering National/Regional Phase under PCT Chapters I and II (in months from priority date) (status on 1 July 2007)					
Note tha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xcuse of delays in meeting time limits before certain designated/elected Offices is contained in the corresponding National Chapters of the <i>PCT Applicant's Guide</i> , Volume II.					
Designated/ elected Office	Chapter I (under PCT Article 22)	Chapter II (under PCT Article 39(1))	Designated/ elected Office	Chapter I (under PCT Article 22)	Chapter II (under PCT Article 39(1))
AE	30	30	GE	31	31
AG ¹	30	30	GH ⁵	30	30
AL	30	31	GM ⁵	30	31
AM ²	31	31	GT ¹	30	30
AP ³	31	31	HN ¹	30	30
AT ⁴	30	30	HR	31	31
AU	31	31	HU ⁴	31	31
AZ ²	30	31	ID	30	31
BA	34	34	IL	30	30
BB	30	30	IN	31	31
BG ⁴	31	31	IS	31	31
BH ¹	30	30	JP	30	30
BR	30	30	KE ⁵	30	30
BW ⁵	31	31	KG ²	31	31
BY ²	31	31	KM ¹	30	30
BZ	30	30 ⁶	KN ¹	30	30
CA	30 (42 ⁷)	30 (42 ⁷)	KP	30	30
CH ^{4,8}	20 ⁹	30	KR	31	31
CN	30	30	KZ ²	31	31
CO	31	31	LA ¹	30	30
CR	31	31	LC ¹	30	30
CU	30	30	LK	30	30
CZ ⁴	31	31	LR	30	31
DE ⁴	30	30	LS ⁵	30	31
DK ⁴	31	31	LT	31	31
DM ¹	30	30	LU ⁴	20 ⁹	30
DO ¹	30	30	LY ¹	30	30
DZ	31	31	MA	31	31
EA	31	31	MD ²	31	31
EC	31	31	ME ¹	30	30
EE ⁴	31	31	MG	30	30
EG	30	30	MK	31	31
EP ¹⁰	31	31	MN	31	31
ES ⁴	30	30	MW ⁵	30	30
FI ⁴	31 ¹¹ (30 ¹²)	1 ¹¹ (30 ¹²)	MX	30	30
GB ⁴	31	31	MY ¹	30	30
GD ¹	30	30	MZ ⁵	31	31

〈계속〉



PCT 국제출원가이드

Time Limits for Entering National/Regional Phase under PCT Chapters I and II (in months from priority date) (status on 1 July 2007)					
Designated/ elected Office	Chapter I (under PCT Article 22)	Chapter II (under PCT Article 39(1))	Designated/ elected Office	Chapter I (under PCT Article 22)	Chapter II (under PCT Article 39(1))
NA ⁵	31	31	SL ⁵	31	31
NG	30	30	SM	31	31
NI ¹	30	30	SV ¹	30	30
NO	31	31	SY	31	31
NZ	31	31	TJ ²	30	31
OA ¹³	30	30	TM ²	30	31
OM ¹	30	30	TN ¹	30	30
PG	31	31	TR ⁴	30 (33 ⁷)	30 (33 ⁷)
PH	30 (31 ⁷)	30 (31 ⁷)	TT	30	31
PL ⁴	30	30	TZ ⁵	21 ⁹	31
PT ⁴	30	30	UA	31	31
RO ⁴	30	30	UG ⁵	21 ⁹	31
RS	30 ¹⁴	30 ¹⁴	US	30	30
RU ²	31	31	UZ	31	31
SC	31	31	VC	30	30
SD ⁵	30	30	VN	31	31
SE ⁴	31	31	ZA	31	31
SG	30	30	ZM ⁵	30	30
SK ⁴	31	31	ZW ⁵	30	31

* Time limit 주석에 관한 설명

1. 정보가 없는 관청의 경우, 통상 조약 제22조(1) 또는 제39조(1)(a) 적용
2. 유라시아특허를 위해 지정/선택한 경우, EA를 참조
3. SZ에 대한 DO/EO로의 역할을 수행
4. 유럽특허를 위해 지정/선택한 경우, EP를 참조
5. ARIPO특허를 위해 지정/선택한 경우, AP를 참조
6. 출원인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연장가능
7. 늦은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추가적인 수수료 납부시의 적용기간
8. LI에 대한 DO/EO로의 역할을 수행
9. 2008.7.1.부터 국내단계 진입 개정규정의 유보를 철회
10. 조약 제22조(1)의 개정 규정 미적용 국가 - 국내단계진입 30개월이 적용되지 아니함
11. 2009.1.1. 이후의 국제출원에만 적용. 유럽특허를 위해 지정/선택한 경우, EP를 참조
12. BE, CY, FR, GR, IE, IT, LV, MC, MT, NL, SI에 대한 DO/EO로의 역할을 수행
13. BF, BJ, CF, CG, CI, CM, GA, GN, GQ, GW, ML, MR, NE, SN, TD, TG에 대한 DO/EO로의 역할을 수행
14. 늦은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추가적인 수수료 납부시 30일간 연장가능

• PCT 국제출원 서식(출원서-한국어)

PCT 출원서 아래 서명자는 본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수리관청 전용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수리관청 명칭 및 "PCT 국제출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희망하는 경우 기재) (최대 12문자) PCT-2008-12	
제1기제관 발명의 명칭			
세탁기능 향상을 위한 보조장치 제조방법			
제2기제관 출원인 ☒ 본란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성명(명칭)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아니한 경우, 본란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홍길동 HONG, Gil-dong 대한민국 대전시 서구 둔산동 900번지 300-100 900 Dunsan-dong, Seo-gu, Daejeon 300-100,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82-42-400-1000	
		팩스번호 82-42-400-1000	
		출원인코드 4-2008-000123-4	
☒ 이메일 사용동의: 본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본 국제출원과 관련한 통지서의 전달용 사본을 송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당해 관청 및 기관이 본란 기재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를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제2기제관 및 제3기제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이메일 주소 abc@abc.com	
국적 (국가명) : 대한민국 KR		거주국 (국가명) : 대한민국 KR	
본란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 : ☒ 모든 지정국 ☐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정국 ☐ 미국만 ☐ 추가기제관에 표시된 국가			
제3기제관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			
☐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제4기제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관할 국제기관에 대하여 우측에 표시된 자격으로 ☒ 대리인 ☐ 대표자 출원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선임되었다.			
성명 및 주소 :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김대리 KIM, Dae-ri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번지 100-200 100 Yeoksam-dong, Kangnam-gu, Seoul 100-200,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82-2-500-1000	
		팩스번호 82-2-501-1000	
		대리인코드 9-2007-00123-4	
☒ 이메일 사용동의: 본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본 국제출원과 관련한 통지서의 전달용 사본을 송부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당해 관청 및 기관이 본란 기재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를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제2기제관 및 제3기제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이메일 주소 def@def.com	
☐ 통신용 주소 : 이 체크박스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신 위의 기재 공간에 특별히 통지서 송달을 위한 별도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 표시한다.			

서식 PCT/RO/101(첫 번째 용지)(2008년 7월)

기재요령 참조



PCT국제출원가이드

용지 번호2.....

제5기제란 지정				
본 출원서의 제출로, 규칙 4.9(a)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역특허 및 국내특허 모두를 위하여 당해 국제출원일에 PCT에 기록되는 모든 특허권이 지정된다. 다만, ☐ DE 독일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 JP 일본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 KR 대한민국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 RU 러시아연방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 (상기 체크박스는 출원서 제출시 또는 규칙 26의2.1에 따라 그 후 출원서 제6기제란에 위 특정 관련 제약국의 국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해 제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내 선출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제약국의 지정을 제외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지정 제외시 이의 취소 불가능)).				
제6기제란 우선권주장				
다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선출원일 (일/월/년)	선출원번호	선출원국명의 표시 :		
		국내출원 : 파리협약 당사국명 또는 WTO 회원국명	지역출원 : 지역관청명	국제출원 : 수리관청명
항목 (1) 2007년 12월 20일 (20.12.2007)	10-2007- 0001234	대한민국 KR		
항목 (2)				
항목 (3)				
항목 (4)				
☐ 추가 기재란에 우선권주장이 추가로 적혀 있음				
인증등본의 송부 : 수리관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선출원의 인증등본을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선출원이 본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인 해당 관청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만 표시) ☒ 모든 항목 ☐ 항목 (1) ☐ 항목 (2) ☐ 항목 (3) ☐ 항목 (4) ☐ 기타, 추가 기재란 참조				
우선권의 회복 : 수리관청에 대하여 위에서 또는 추가 기재란에서 우선권 주장 항목 ()에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 회복을 신청한다. (제6기제란에 대한 기재요령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인용에 의한 보완 : 조약 제11조(1)(iii)(d) 또는 (e)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의 요소, 또는 규칙 20.5(a)에서 규정하는 명세서, 청구 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가 본 국제출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약 제11조(1)(iii) 규정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이 수리관청에 최초로 접수된 날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요소 또는 부분은 규칙 20.6에 따른 확인을 조건으로, 규칙 20.6과 관련하여 본 국제출원에 있어서 인용에 의해 보완된다.				
제7기제란 국제조사기관				
국제조사기관 (ISA) 선택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 선택한 기관을 표시한다; 두 문자 코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ISA / KR				

서식 PCT/RO/101(두 번째 용지)(2008년 7월)

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3.....

제9기제관 체크 리스트: 출원 언어	
본 국제출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서면으로, 다음의 용지 수	본 국제출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첨부되어 있다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에 표기를 하고 오른쪽 열에 각 항목의 개수를 표기한다):
출원서(선언서 및 추가 용지 포함) :	3
명세서(서열목록 및/또는 관련 표 제외) :	10
청구범위 :	2
요약서 :	1
도면 :	1
용지 매수 소계 :	17
서열목록 :	
서열목록 관련 표 :	
(두 가지 모두, 전자적 형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제출된 실제 매수 표기; 아래 (c) 참조)	
총 용지 매수 :	17
(b) ☐ 전자적 형태인 경우 (시행세칙 제801조(a)(i))	
(i) ☐ 서열목록	
(ii) ☐ 서열목록 관련 표	
☐ 전자적 형태로 병행하는 경우 (시행세칙 제801조(a)(ii))	
(i) ☐ 서열목록	
(ii) ☐ 서열목록 관련 표	
다음에 포함하는 매체의 형태 및 개수 (디스켓, CD ROM, CD R 또는 기타)	
☐ 서열목록 :	
☐ 서열목록 관련 표 :	
(추가 사본은 오른쪽 열의 항목 9(ii) 및/또는 10(ii)에 표기)	
요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도면 번호:	1
출원 언어:	한국어
제10기제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출원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김 대 리 KIM, Dae-ri 김 대 리	

수리관청 전용	
1.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의 실제 접수일:	2. 도면 : ☐ 접수 : ☐ 미접수 :
3.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완성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추후 기간내 제출에 따른 정정된 실제 접수일:	
4. PCT 제11조(2)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보완서로서 기간내 제출된 보완서의 접수일:	
5. 국제조사기관 (관할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ISA /	
6. ☐ 조사항료 납부시까지 지연된 조사용 사본의 송부	

국제사무국 전용	
국제 사무국의 기록원본 접수일:	

서식 PCT/RO/101(마지막 용지)(2008년 7월)

기재요령 참조



PCT국제출원가이드

본 용지는 국제출원의 일부가 아니며 국제출원 용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PCT 수수료 계산 용지 출원서 부속문서		수리관청 전용 국제출원번호. 수리관청의 일부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CT-2008-12	
출원인 가나나 주식회사 등		
소정의 수수료 계산		
1. 송달료	45,000 T	
2. 조사료	450,000 S	
국제조사는 <u>한국특허청</u> 에 의해 수행된 것임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국제조사를 수행하도록 선택한 기관의 이름을 기입한다)		
3. 국제출원료		
제9기제란의 항목 (b) 및/또는 (c)가 적용되는 경우, 용지매수 소계를 기입한다. } 제9기제란의 항목 (b) 및 (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총 용지 매수를 기입한다.		
i1 처음 30매	1,327,000 i1	
i2 $\frac{5}{30\text{매를 초과하는 용지매수}} \times \frac{15,000}{\text{용지당 수수료}} =$	75,000 i2	
i3 additional component (only if sequence listing and/or tables related thereto are filed in electronic form under Section 801(a)(i) or both in that form and on paper, under Section 801(a)(ii)) $400 \times \frac{\quad}{\text{fee per sheet}} =$ i3		
i1, i2 및 i3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I란에 기입한다.		1,402,000 I
4. 선조사 서류에 대한 수수료(해당하는 경우)	ES	
5. 총금액	1,897,000	
T, S, I 및 ES에 적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금액란에 기입한다.		TOTAL
납부방법 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납부서 제출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상기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일·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식 PCT/RO/101 부속문서 (2008년 7월)

기재요령 참조

• PCT 국제출원 서식(Request)

PCT REQUEST The undersigned requests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For receiving Office use only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International Filing Date	
		Name of receiving Office and i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if desired) (12 characters maximum) CHOCO 95549	
Box No. I TITLE OF INVENTION			
PROCESS FOR FOLDING WRAPPING PAPER FOR CHOCOLATES			
Box No. II APPLICANT ☐ This person is also inventor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CANDY WRAP UNLIMITED, INC. 300 Colorado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430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phone No. (+1) 301 876-5432	
		Facsimile No. (+1) 301 876-5555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 E-mail authorization: Marking this check-box authorizes the receiving Offic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to use the e-mail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to send, if the Office or Authority so wishes, advance copies of notifications in resp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See also the Notes to Boxes Nos. II and III.)		E-mail address candy@anumma.com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U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US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all designated States excep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			
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has been appointed to act on behalf of the applicant(s) before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a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DAVIS, Catherine 2500 Virgi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37-1902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phone No. (+1) 301 557-3054	
		Facsimile No. (+1) 301 557-3060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44,111	
☒ E-mail authorization: Marking this check-box authorizes the receiving Offic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to use the e-mail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to send, if the Office or Authority so wishes, advance copies of notifications in resp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See also the Notes to Boxes Nos. II and III.)		E-mail address davispatents@anumma.com	
☐ Address for correspondence: Mark this check-box where no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is/has been appointed and the space above is used instead to indicate a special address to which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PCT 국제출원가이드

Sheet No. ...2...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i>If none of the following sub-boxes is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i>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JONES, Mary 1600 South Eads Street Arlington, Virginia 22202-2913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person is: ☐ applicant only ☒ applicant and inventor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U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US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all designated States excep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This person is: ☐ applicant only ☐ applicant and inventor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all designated States excep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This person is: ☐ applicant only ☐ applicant and inventor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all designated States excep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This person is: ☐ applicant only ☐ applicant and inventor ☐ inventor only (If this check-box is marked, do not fill in below.)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 all designated States ☐ all designated States excep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are indicated on another continuation sheet.	

Form PCT/RO/101 (continuation sheet) (July 2008)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Supplemental Box

If the Supplemental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1. *If, in any of the Boxes, except Boxes Nos. VIII(i) to (v) for which a special continuation box is provided, the space is insufficient to furnish all the information: in such case, write iContinuation of Box No. . . . i (indicate the number of the Box) and furnish the information in the same manner as required according to the captions of the Box in which the space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 (i) *if more than one person is to be indicated as applicant and/or inventor and no icontinuation sheeti is available: in such case, write iContinuation of Box No. IIIi and indicate for each additional person the same type of information as required in Box No. III.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
 - (ii) *if, in Box No. II or in any of the sub-boxes of Box No. III, the indication i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i is checked: in such case, write iContinuation of Box No. IIi or iContinuation of Box No. IIIi or iContinuation of Boxes No. II and No. IIIi (as the case may be), indicate the name of the applicant(s) involved and, next to (each) such name, the State(s) (and/or, where applicable, ARIPO, Eurasian, European or OAPI patent) for the purposes of which the named person is applicant;*
 - (iii) *if, in Box No. II or in any of the sub-boxes of Box No. III, the inventor or the inventor/applicant is not inventor for the purposes of all designated States or for the purpos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such case, write iContinuation of Box No. IIi or iContinuation of Box No. IIIi or iContinuation of Boxes No. II and No. IIIi (as the case may be), indicate the name of the inventor(s) and, next to (each) such name, the State(s) (and/or, where applicable, ARIPO, Eurasian, European or OAPI patent) for the purposes of which the named person is inventor;*
 - (iv) *if, in addition to the agent(s) indicated in Box No. IV, there are further agents: in such case, write iContinuation of Box No. IVi and indicate for each further agent the same type of information as required in Box No. IV;*
 - (v) *if, in Box No. VI, there are more than four earlier applications whose priority is claimed: in such case, write iContinuation of Box No. VIIi and indicate for each additional earlier application the same type of information as required in Box No. VI.*
2. *If the applicant intends to make an indication of the wish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treated, in certain designated States, a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of addition, certificate of addition, 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or 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 in such a case, write the name or two-letter code of each designated State concerned and the indication i patent of addition, i certificate of addition, i 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i or i 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 i the number of the parent application or parent patent or other parent grant and the date of grant of the parent patent or other parent grant or the date of filing of the parent application (Rules 4.11(a)(i) and 49bis.1(a) or (b)).*
3. *If the applicant intends to make an indication of the wish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trea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 of an earlier application: in such a case, write iUnited States of America, i or iUS, i and the indication i continuation, i or i continuation-in-part, i the number and the filing date of the parent application (Rules 4.11(a)(ii) and 49bis.1(d)).*



PCT 국제출원가이드

Sheet No.

Box No. V DESIGNATIONS				
The filing of this request constitutes under Rule 4.9(a) the designation of all Contracting States bound by the PCT on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for the grant of every kind of protection available and, where applicable, for the grant of both regional and national patents. However, ☐ DE Germany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 JP Japan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 KR Republic of Korea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 RU Russian Federation is not designated for any kind of national protection <i>(The check-boxes above may only be used to exclude (irrevocably) the designations concerned if, at the time of filing or subsequently under Rule 26bis. 1,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in Box No. VI a priority claim to an earlier national application filed in the particular State concerned, in order to avoid the ceasing of the effect, under the national law, of this earlier national application.)</i>				
Box No. VI PRIORITY CLAIM				
The priority of the following earlier application(s) is hereby claimed:				
Filing date of earlier application (day/month/year)	Number of earlier application	Where earlier application is:		
		national application: country or Member of WTO	regional application: regional Offic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ceiving Office
item (1) 10 November 2007 (10.11.2007)	60/980,460	US		
item (2) 10 January 2008 (10.01.2008)	08187654.4		EP	
item (3)				
item (4)				
☐ Further priority claims are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Transmit certified copy: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prepare and transmi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 certified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s) <i>(only if the earlier application was filed with the Office which for the purposes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the receiving Office)</i> identified above as: ☐ all items ☒ item (1) ☐ item (2) ☐ item (3) ☐ item (4) ☐ other, see Supplemental Box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 for the earlier application(s) identified above or in the Supplemental Box as item(s) (_____). <i>(See also the Notes to Box No. VI; further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support a request to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i>				
Incorporation by reference: where an elemen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1(1)(iii)(d) or (e) or a part of the description, claims or drawings referred to in Rule 20.5(a) is not otherwise contained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but is completely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ose priority is claimed on the date on which one or more el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1(1)(iii) were first received by the receiving Office, that element or part is, subject to confirmation under Rule 20.6,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Rule 20.6.				
Box No. VII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Choice of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i>(if more than on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 competent to carry out the international search, indicate the Authority chosen; the two-letter code may be used):</i> ISA/				

Form PCT/RO/101 (second sheet) (July 2008)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Continuation of Box No. VII USE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REFERENCE TO THAT SEARCH		
☒ The ISA indicated in Box No. VII is requested to take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es) indicated below (<i>see also Notes to Box VII: use of results of more than two earlier searches</i>).		
Filing date (<i>day/month/year</i>) 10 January 2008(10.01.2008)	Application Number 08187654.4	Country (<i>or regional Office</i>) EP
☐ Statement (Rule 4.12(ii)):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application in respect of which the earlier search was carried out except, where applicable, that it is filed in a different language.		
☒ Availability of documents: the following documents are available to the ISA in a form and manner acceptable to it and therefore do not need to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to the ISA (Rule 12bis.1(f)):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a translation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If known, please indicate below the document(s) available to the ISA:</i>)		
☐ Transmit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ther documents (<i>where the earlier search was not carried out by the ISA indicated above but by the same Office as that which is acting as the receiving Office</i>):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prepare and transmit to the ISA (Rule 12bis.1(c)):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Where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are neither available from a digital library nor transmitted by the receiving Office,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submit them to the receiving Office (Rule 12bis.1(a)) (<i>See item 11. in the check-list and also Notes to Box No. VII</i>).		
Filing date (<i>day/month/year</i>)	Application Number	Country (<i>or regional Office</i>)
☐ Statement (Rule 4.12(ii)):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application in respect of which the earlier search was carried out except, where applicable, that it is filed in a different language.		
☐ Availability of documents: the following documents are available to the ISA in a form and manner acceptable to it and therefore do not need to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to the ISA (Rule 12bis.1(f)):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a translation of the earlier application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a translation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nto a language which is accepted by the ISA,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i>If known, please indicate below the document(s) available to the ISA:</i>)		
☐ Transmit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 and other documents (<i>where the earlier search was not carried out by the ISA indicated above but by the same Office as that which is acting as the receiving Office</i>): the receiving Office is requested to prepare and transmit to the ISA (Rule 12bis.1(c)): ☐ a copy of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a copy of any document cited in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 Where the results of the earlier search are neither available from a digital library nor transmitted by the receiving Office,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submit them to the receiving Office (Rule 12bis.1(a)) (<i>See item 11. in the check-list and also Notes to Box No. VII</i>).		
☐ Further earlier searche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		
Box No. VIII DECLARATIONS		
The following declarations are contained in Boxes Nos. VIII (i) to (v) (<i>mark the applicable check-boxes below and indicate in the right column the number of each type of declaration</i>):		Number of declarations
☐ Box No. VIII (i)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
☒ Box No. VIII (ii)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
☐ Box No. VIII (iii)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
☒ Box No. VIII (iv)	Declaration of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Box No. VIII (v)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



Sheet No.

Box No. VIII (i) DECLARATION: IDENTITY OF THE INVENTOR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 I;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i).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 inventor (Rules 4.17(i) and 51 bis.1(a)(i)):

NOT INCLUDED
(not needed since the inventor is named in Box No. III)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i)) (July 2008)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 . . 5 . . .

Box No. VIII (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2;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ii).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Rules 4.17(ii) and 51bis.1(a)(ii)), in a case where the declaration under Rule 4.17(iv)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CANDY WRAP UNLIMITED, INC., is entitled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patent by virtue of the following:

an assignment from:

JONES, Mary, to CANDY WRAP UNLIMITED, INC., dated 20 September 2007 (20.09.2007).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i)".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ii)) (April 2008)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PCT 국제출원가이드

Sheet No.

Box No. VIII (iii) DECLARATION: ENTITLEMENT TO CLAIM PRIORITY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3;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iii).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the applicant's entitlement, as at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to claim the priority of the earlier application specified below,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applicant who filed the earlier application or where the applicant's name has changed since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Rules 4.17(iii) and 51bis.1(a)(iii)):

TO BE INCLUDED
ONLY IF NECESSARY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iContinuation of Box No. VIII (iii).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iii)) (July 2008)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Box No. VIII (iv) DECLARATION: INVENTORSHIP (only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following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4;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iv).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s 4.17(iv) and 51bis.1(a)(iv))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first and sole (if only one inventor is listed below) or joint (if more than one inventor is listed below) inventor of the subject matter which is claimed and for which a patent is sought.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which it forms a part (if filing declaration with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 (if furnishing declaration pursuant to Rule 26ter).

I hereby declare that my residence, mailing address, and citizenship are as stated next to my name.

I hereby state that I have reviewed and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including the claims of said application. I have identified in the request of said application, in compliance with PCT Rule 4.10, any claim to foreign priority, and I have identified below, under the heading *Prior Applications*, by application number, country or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ay, month and year of filing, any application for a patent or inventor's certificate filed in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any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at least one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ing a filing date before that of the application on which foreign priority is claimed.

Prior Applications:

I hereby acknowledge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known by me to be material to patentability as defined by 37 C.F.R. § 1.56, including for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s, material information which became available between the filing date of the prior application and the PCT international filing date of the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I hereby declare that all statements made herein of my own knowledge are true and that all statements made on information and belief are believed to be true; and further that these statements were made with the knowledge that willful false statements and the like so made are punishable by fine or imprisonment, or both, under Section 1001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that such willful false statements may jeopardize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r any patent issued thereon.

Name: JONES, Mary

Residence: Arlington, Virginia
 (city and either US state, if applicable, or country)

Mailing Address: 1600 South Eads Street
Arlington, Virginia 22202-2913
United States of America

Citizenship: United States of America

Inventor's Signature: Mary Jones Date: 3 July 2008 (03.07.2008)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Name:

Residence:
 (city and either US state, if applicable, or country)

Mailing Address:

Citizenship:

Inventor's Signature: Date: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iContinuation of Box No. VIII (iv)i.



PCT 국제출원가이드

Sheet No.

Box No. VIII (v) DECLARATION: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The declaration must conform to the standardized wording provided for in Section 215; see Notes to Boxes Nos. VIII, VIII (i) to (v) (in general) and the specific Notes to Box No. VIII (v).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Declaration as to non-prejudicial disclosures or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Rules 4.17(v) and 51 bis.1(a)(v)):

TO BE INCLUDED
ONLY IF NECESSARY

☐ This declaration is continued on the following sheet, iContinuation of Box No. VIII (v)i.

Form PCT/RO/101 (declaration sheet (v)) (July 2008)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Sheet No.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 to (v) DECLARATION

*If the space is insufficient in any of Boxes Nos. VIII (i) to (v) to furnish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in the case where **more than two inventors are to be named** in Box No. VIII (iv), in such case, write (Continuation of Box No. VIII ...i (indicate the item number of the Box) and furnish the information in the same manner as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the Box in which the space was insufficient.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in respect of two or more declarations, a separate continuation box must be used for each such declaration. If this Box is not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quest.*

TO BE INCLUDED
ONLY IF NECESSARY



PCT 국제출원가이드

Sheet No.

Box No. IX CHECK LIST; LANGUAGE OF FILING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a) on paper,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request (including declaration and supplemental sheets) : 7 description (excluding sequence listing and/or tables related thereto) : 24 claims : 31 abstract : 1 drawings : 4 Sub-total number of sheets : 39 sequence listing : tables related thereto : (for both, actual number of sheets if filed on paper, whether or not also filed in electronic form; see (c) below) Total number of sheets : 39 (b) ☐ only in electronic form (Section 801(a)(i)) (i) ☐ sequence listing (ii) ☐ tables related thereto (c) ☐ also in electronic form (Section 801(a)(ii)) (i) ☐ sequence listing (ii) ☐ tables related thereto Type and number of carriers (diskette, CD-ROM, CD-R or other) on which are contained the ☐ sequence listing: ☐ tables related thereto: (additional copies to be indicated under items 9(ii) and/or 10(ii), in right colum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item(s) (mark the applicable check-boxes below and indicate in right column the number of each item): 1. ☒ fee calculation sheet : 2. ☒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 3. ☐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 4. ☒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if any: : 5. ☐ statement explaining lack of signature : 6. ☒ priority document(s) identified in Box No. VI as item(s): : 7. ☐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into (language): : 8. ☐ separate indications concerning deposited microorganism or other biological material : 9. ☐ sequence listing in electronic form (indicate type and number of carriers) (i) ☐ copy submitted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under Rule 13ter only (and not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ii) ☐ (only where check-box (b)(i) or (c)(i) is marked in left column) additional copie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copy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under Rule 13ter : (iii) ☐ together with relevant statement as to the identity of the copy or copies with the sequence listing mentioned in left column : 10. ☐ tables in electronic form related to sequence listing (indicate type and number of carriers) (i) ☐ copy submitted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under Section 802(b-quater) only (and not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ii) ☐ (only where check-box (b)(ii) or (c)(ii) is marked in left column) additional copie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copy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under Section 802(b-quater) : (iii) ☐ together with relevant statement as to the identity of the copy or copies with the tables mentioned in left column : 11. ☐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es) (Rule 12bis.1(a)) : 12. ☒ other (specify): :
Figure of the drawings which should accompany the abstract:	Languag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English	
Box No. X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e request). Catherine Davis Catherine Davis		

For receiving Office use only	
1. Date of actual receipt of the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	2. Drawings: ☐ received: ☐ not received:
3. Corrected date of actual receipt due to later but timely received papers or drawings completing the purported international application:	
4. Date of timely receipt of the required corrections under PCT Article 11(2):	
5.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f two or more are competent): ISA /	6. ☐ Transmittal of search copy delayed until search fee is paid
For International Bureau use only	
Date of receipt of the record copy by the International Bureau:	

Form PCT/RO/101 (last sheet) (July 2008)

See Notes to the request form



This sheet is not part of and does not count as a shee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PCT

FEE CALCULATION SHEET Annex to the Request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CHOCO 95549		For receiving Office use only	
Applicant CANDY WRAP UNLIMITED, INC., et al.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CALCULATION OF PRESCRIBED FEES		Date stamp of the receiving Office	
1. TRANSMITTAL FEE USD 300 T			
2. SEARCH FEE USD 2,496 S International search to be carried out by EP <i>(If two or mor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are competent to carry out the international search, indicate the name of the Authority which is chosen to carry out the international search.)</i>			
3. INTERNATIONAL FILING FEE Where items (b) and/or (c) of Box No. IX apply, enter Sub-total number of sheets } 39 Where items (b) and (c) of Box No. IX do not apply, enter Total number of sheets } <i>i1</i> first 30 sheets 1,338 <i>i1</i> <i>i2</i> 9 x 15 = 135 <i>i2</i> number of sheets in excess of 30 fee per sheet <i>i3</i> additional component (only if a sequence listing and/or tables related thereto are filed in electronic form under Section 801(a)(i), or both in that form and on paper, under Section 801(a)(ii)): 400 x fee per sheet 400 <i>i3</i> Add amounts entered at i1, i2 and i3 and enter total at I 1,473 I <i>(Applicants from certain States are entitled to a reduction of 90% of the international filing fee. Where the applicant is (or all applicants are) so entitled, the total to be entered at I is 10% of the international filing fee.)</i>			
4. FEE FOR PRIORITY DOCUMENT (if applicable) P			
5. FEE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if applicable) RP			
6. FEE FOR EARLIER SEARCH DOCUMENTS (if applicable) ES			
7. TOTAL FEES PAYABLE USD 4,269 Add amounts entered at T, S, I, P, RP and ES, and enter total in the TOTAL box		TOTAL	
MODE OF PAYMENT (Not all modes of payment may be available at all receiving Offices)			
☒ authorization to charge deposit account (see below) ☐ postal money order ☐ cash ☐ coupons ☐ cheque ☐ bank draft ☐ revenue stamps ☐ other (specify):			
AUTHORIZATION TO CHARGE (OR CREDIT) DEPOSIT ACCOUNT <i>(This mode of payment may not be available at all receiving Offices)</i>		Receiving Office: RO/ US	
☒ Authorization to charge the total fees indicated above. ☒ <i>(This check-box may be marked only if the conditions for deposit accounts of the receiving Office so permit) Authorization to charge any deficiency or credit any overpayment in the total fees indicated above.</i> ☐ Authorization to charge the fee for priority document.		Deposit Account No.: 12-3456 Date: 10 July 2008(10. 07. 2008) Name: Catherine Davis Signature: <i>Catherine Davis</i>	

Form PCT/RO/101 (Annex) (July 2008)

See Notes to the fee calculation sheet



PCT 국제출원가이드

• PCT 국제예비심사청구 서식(Demand)

The demand must be filed directly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r, if two or more Authorities are competent, with the one chosen by the applicant. The full name or two-letter code of that Authority may be indicated by the applicant on the line below:

IPEA/ EP

PCT

CHAPTER II

DEMAND

under Article 31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The undersigned requests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pecified below b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	
Identification of IPEA	Date of receipt of DEMAND
Box No. I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CHOCO 95549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US2008/654321	International filing date (day/month/year) 10 July 2008 (10.07.2008)
(Earliest) Priority date (day/month/year) 10 November 2007 (10.11.2007)	
Title of invention PROCESS FOR FOLDING WRAPPING PAPER FOR CHOCOLATES	
Box No. II APPLICANT(S)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CANDY WRAP UNLIMITED, INC. 300 Colorado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430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phone No. (+1) 301 876-5432
	Facsimile No. (+1) 301 876-5555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 E-mail authorization: Marking this check-box authoriz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to use the e-mail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to send, if the Authority so wishes, advance copies of notifications in resp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See also the Notes to Box No. II.)	E-mail address candy@anumma.com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U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US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JONES, Mary 1600 South Eads Street Arlington, Virginia 22202-2913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U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US
☐ 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	

Form PCT/IPEA/401 (first sheet) (July 2008)

See Notes to the demand form



Sheet No. . . .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Continuation of Box No. II APPLICANT(S) <i>If none of the following sub-boxes is used, this shee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mand.</i>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State (that is, country) of nationality: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 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nother continuation sheet.	

Form PCT/IPEA/401 (continuation sheet) July 2008)

See Notes to the demand form



PCT 국제출원가이드

Sheet No. . . .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US2008/654321

Box No. III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The following person i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and ☒ has been appointed earlier and represents the applicant(s) also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 is hereby appointed and any earlier appointment of (an) agent(s)/common representative is hereby revoked.
☐ is hereby appointed, specifically for the procedure before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n addition to the agent(s)/common representative appointed earlier.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DAVIS, Catherine
2500 Virgi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37-1902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phone No.

(+1) 301 557-3054

Facsimile No.

(+1) 301 557-3060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 **E-mail authorization:** Marking this check-box authoriz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to use the e-mail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to send, if the Authority so wishes, advance copies of notifications in respect of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See also the Notes to Box No. II.)*

E-mail address

davispatents@anumma.com

☐ **Address for correspondence:** Mark this check-box where no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is/has been appointed and the space above is used instead to indicate a special address to which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Box No. IV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1. The applicant wish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to start on the basis of:**

- ☐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
- the description ☐ as originally filed
☒ as amended under Article 34
- the claims ☐ as originally filed
☐ as amended under Article 19 (together with any accompanying statement)
☒ as amended under Article 34
- the drawings ☒ as originally filed
☐ as amended under Article 34

2. ☐ The applicant wishes any amendment to the claims under Article 19 to be considered as reversed.

3. ☐ Where the IPEA wishes to start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international search in accordance with Rule 69.1(b), the applicant requests the IPEA **to postpone** the start of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time limit under Rule 69.1(d).

4. ☐ The applicant expressly wish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to start earlier** than at the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time limit under Rule 54bis.1(a).

* Where no check-box is marked,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will start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 or, where a copy of amendments to the claims under Article 19 and/or amendm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Article 34 are received by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before it has begun to draw up a written opinion or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as so amended.

Languag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English**

- ☒ which is the language in whic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filed.
☐ which is the language of a translation furnished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 which is the language of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which is the language of the translation (to be) furnished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Box No. V ELECTION OF STATES

The filing of this demand constitutes the election of all Contracting States which are designated and are bound by Chapter II of the PCT.

Form PCT/IPEA/401 (second sheet) (July 2008)

See Notes to the demand form



Sheet No. . . .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US2008/654321																																																				
Box No. VI CHECK LIST																																																					
The demand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language referred to in Box No. IV,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0%;">1.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sheets</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2. amendments under Article 34</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sheets</td> <td></td> <td></td> <td></td> </tr> <tr> <td>3.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amendments under Article 19</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sheets</td> <td></td> <td></td> <td></td> </tr> <tr> <td>4.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statement under Article 19</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sheets</td> <td></td> <td></td> <td></td> </tr> <tr> <td>5. let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sheets</td> <td></td> <td></td> <td></td> </tr> <tr> <td>6. other (<i>specify</i>)</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sheets</td> <td></td> <td></td> <td></td> </tr> </table>	1.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	sheets				2. amendments under Article 34	:	sheets				3.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amendments under Article 19	:	sheets				4.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statement under Article 19	:	sheets				5. letter	:	sheets				6. other (<i>specify</i>)	:	sheets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th> </tr>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received</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not received</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		received	not received	☐	☐	☐	☐	☐	☐	☐	☐	☐	☐	☐	☐
1.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	sheets																																																			
2. amendments under Article 34	:	sheets																																																			
3.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amendments under Article 19	:	sheets																																																			
4.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statement under Article 19	:	sheets																																																			
5. letter	:	sheets																																																			
6. other (<i>specify</i>)	:	sheet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																																																					
received	not received																																																				
☐	☐																																																				
☐	☐																																																				
☐	☐																																																				
☐	☐																																																				
☐	☐																																																				
☐	☐																																																				
The demand is also accompanied by the item(s) marked below: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1. ☒ fee calculation sheet 2. ☐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3. ☐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4. ☐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if any: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5. ☐ statement explaining lack of signature 6. ☐ sequence listing in electronic form 7. ☐ tables in electronic form related to a sequence listing 8. ☐ other (<i>specify</i>): </td> </tr> </table>						1. ☒ fee calculation sheet 2. ☐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3. ☐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4. ☐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if any:	5. ☐ statement explaining lack of signature 6. ☐ sequence listing in electronic form 7. ☐ tables in electronic form related to a sequence listing 8. ☐ other (<i>specify</i>):																																														
1. ☒ fee calculation sheet 2. ☐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3. ☐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4. ☐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if any:	5. ☐ statement explaining lack of signature 6. ☐ sequence listing in electronic form 7. ☐ tables in electronic form related to a sequence listing 8. ☐ other (<i>specify</i>):																																																				
Box No. VII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e demand). Catherine Davis Catherine Dav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																																																					
1. Date of actual receipt of DEMAND:																																																					
2. Adjusted date of receipt of demand due to CORRECTIONS under Rule 60.1(b):																																																					
3. ☐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mand is AFTER the expiration of 19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and item 4 or 5, below, does not apply. ☐ The applicant has been informed accordingly. 4. ☐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mand is WITHIN the time limit of 19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as extended by virtue of Rule 80.5. 5. ☐ Although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mand is after the expiration of 19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the delay in arrival is EXCUSED pursuant to Rule 82.			6. ☐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mand i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under Rule 54bis.1(a) and item 7 or 8, below, does not apply. 7. ☐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mand is WITHIN the time limit under Rule 54bis.1(a) as extended by virtue of Rule 80.5. 8. ☐ Although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mand i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under Rule 54bis.1(a), the delay in arrival is EXCUSED pursuant to Rule 82.																																																		
For International Bureau use only																																																					
Demand received from IPEA on:																																																					

Form PCT/IPEA/401 (last sheet) (July 2008)

See Notes to the demand form



PCT 국제출원가이드

CHAPTER II

PCT

FEE CALCULATION SHEET

Annex to the Demand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PCT/US2008/654321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CHOCO 95549	Date stamp of the IPEA	
Applicant CANDY WRAP UNLIMITED, INC., et al.		
CALCULATION OF PRESCRIBED FEES		
1. Preliminary examination fee	EUR 1,675	P
2. Handling fee (<i>Applicants from certain States are entitled to a reduction of 90% of the handling fee. Where the applicant is (or all applicants are) so entitled, the amount to be entered at H is 10% of the handling fee.</i>)	EUR 121	H
3. Total of prescribed fees Add the amounts entered at P and H and enter total in the TOTAL box	EUR 1,796	
TOTAL		
MODE OF PAYMENT (<i>Not all modes of payment may be available at all IPEAs</i>)		
☐ authorization to charge deposit account with the IPEA (see below)	☐ cash	
☐ cheque	☐ revenue stamps	
☐ postal money order	☐ coupons	
☒ bank draft	☐ other (<i>specify</i>):	
AUTHORIZATION TO CHARGE (OR CREDIT) DEPOSIT ACCOUNT (<i>This mode of payment may not be available at all IPEAs</i>)		
☐ Authorization to charge the total fees indicated above.	IPEA/ EP	
☐ (<i>This check-box may be marked only if the conditions for deposit accounts of the IPEA so permit</i>) Authorization to charge any deficiency or credit any overpayment in the total fees indicated above.	Deposit Account No.:	
	Date: 15 April 2009 (15.04.2009)	
	Name: Catherine Davis	
	Signature: Catherine Dav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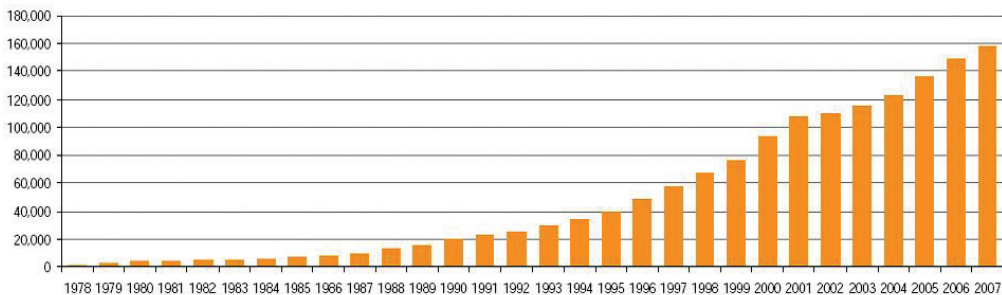
Form PCT/IPEA/401 (Annex) (July 2008)

See Notes to the fee calculation sheet

• PCT 국제출원관련 주요 통계

(2007년, WIPO PCT 연보 중심)

1. 세계 PCT출원 현황



* 출처 :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2. PCT출원 순위

Countries of Origin	2003	2004	2005	2006	2007	Change compared to 2006
United States of America	41,031	43,351	46,809	51,241	53,147	3.7%
Japan	17,414	20,264	24,869	27,022	27,732	2.6%
Germany	14,662	15,214	15,984	16,728	17,889	6.9%
Republic of Korea	2,949	3,558	4,688	5,945	7,066	18.9%
France	5,171	5,184	5,748	6,243	6,523	4.5%
United Kingdom	5,206	5,027	5,0847	5,091	5,610	10.2%
China	1,295	1,706	2,503	3,949	5,470	38.5%
Netherlands	4,479	4,284	4,500	4,534	4,165	-8.1%
Switzerland	2,861	2,898	3,291	3,600	3,728	3.6%
Sweden	2,612	2,851	2,883	3,323	3,646	9.7%
Italy	2,163	2,189	2,349	2,708	2,911	7.5%
Canada	2,271	2,104	2,319	2,573	2,827	9.9%
Australia	1,680	1,837	1,996	2,002	2,071	3.5%
Finland	1,557	1,672	1,893	1,844	1,994	8.1%
Israel	1,129	1,227	1,454	1,594	1,719	7.9%
All Others	8,722	9,263	10,363	11,185	11,901	6.4%
Total	115,202	122,629	136,733	149,582	158,400	5.9%

* 출처 :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PCT 국제출원가이드

3. 언어별 출원현황

Language of Filing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Share
English	73,472	77,842	84,650	91,644	95,164	60.1%
Japanese	15,866	18,263	22,150	24,292	25,609	16.2%
German	14,487	14,603	15,867	16,730	17,965	11.3%
French	4,529	4,504	4,867	5,168	4,887	3.1%
Chinese	1,036	1,428	2,232	3,476	4,875	3.1%
Korean	1,750	2,063	2,668	3,543	4,650	2.9%
Italian	581	632	707	1,021	1,368	0.9%
Spanish	850	844	1,070	1,165	1,247	0.8%
Russian	601	582	689	750	695	0.4%
Finnish	404	354	429	415	510	0.3%
Swedish	706	640	547	439	489	0.3%
Dutch	513	501	485	501	489	0.3%
Norwegian	187	143	175	172	182	0.1%
Danish	134	126	111	138	122	0.1%
Hungarian	17	14	24	41	43	<0.1%
Turkish	17	23	12	17	19	<0.1%
Slovenian	13	13	14	22	19	<0.1%
Portuguese	9	6	9	17	18	<0.1%
Czech	8	2	10	11	18	<0.1%
Croatian	11	12	11	11	16	<0.1%
Slovak	8	4	5	8	11	<0.1%
All Other	1	0	1	0	2	<0.1%
Total	115,200	122,629	136,733	149,581	158,400	100%

* 출처 :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4. 국제조사절차 수행 현황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2003	2004	2005	2006	2006	2007 Share
European Patent Office	60,856	63,229	67,114	71,521	74,629	47.1%
United States of America	26,478	26,887	28,608	30,497	29,627	18.7%
Japan	16,142	18,695	23,020	25,146	26,139	16.5%
Republic of Korea	2,595	3,211	4,230	6,669	10,175	6.4%
Sweden	3,518	3,400	3,381	3,190	3,155	2.0%
China	1,225	1,650	2,482	3,890	5,524	3.5%
Australia	2,249	2,503	2,737	2,750	2,821	1.8%
Canada		840	2,103	2,313	2,500	1.6%
Austria	748	824	915	1,097	1,179	0.7%
Spain	746	772	986	1,062	1,150	0.7%
Russian Federation	641	616	723	805	778	0.5%
Finland			426	642	723	0.4%
Total	115,198	122,627	136,725	149,582	158,400	100%

* 출처 :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5.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Share
European Patent Office	31,474	21,662	13,886	11,621	10,566	55.3%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6	11,564	5,545	3,778	2,611	13.7%
Japan	6,810	4,208	2,526	2,580	2,583	13.5%
Australia	1,693	1,249	1,036	9769	879	4.6%
Sweden	2,617	1,617	986	687	667	3.5%
Republic of Korea	1,079	932	652	597	515	2.7%
Canada		1	330	4431	401	2.1%
China	670	501	436	357	384	2.0%
Finland			4	126	153	0.8%
Spain	8	129	128	110	127	0.7%
Russian Federation	210	162	138	112	116	0.6%
Austria	239	150	160	113	98	0.5%
Total	64,976	42,175	25,827	21,481	19,100	100%

* 출처 :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6. 국내단계 진입 현황

PCT National Phase Entries by Country of Origin	2002	2003	2004	2005	2006
United States of America	59,153	61,088	94,521	111,048	123,824
Japan	23,779	27,340	42,310	53,350	63,363
Germany	25,889	26,279	36,221	39,940	43,611
Netherlands	6,956	6,491	14,540	17,197	16,843
France	9,146	10,041	15,145	15,683	16,745
United Kingdom	10,340	10,214	13,654	14,812	14,981
Switzerland	5,575	6,142	9,980	12,064	12,415
Sweden	5,735	5,232	7,412	7,468	8,527
Republic of Korea	1,952	2,088	4,734	6,086	7,874
Australia	3,055	3,089	5,498	5,664	6,477
Italy	3,073	3,441	5,659	5,964	6,289
Canada	1,961	1,989	5,696	5,605	6,219
Finland	2,830	3,035	4,216	4,487	4,958
Denmark	1,699	1,705	2,940	3,523	3,537
Belgium	1,464	1,580	2,368	2,864	3,508
Israel	1,096	1,213	2,924	3,010	3,194
Austria	1,286	1,330	1,860	2,223	2,365
China	440	516	1,318	1,802	2,260
Spain	887	978	1,530	1,731	2,124
Norway	753	716	1,418	1,415	1,572

* 출처 :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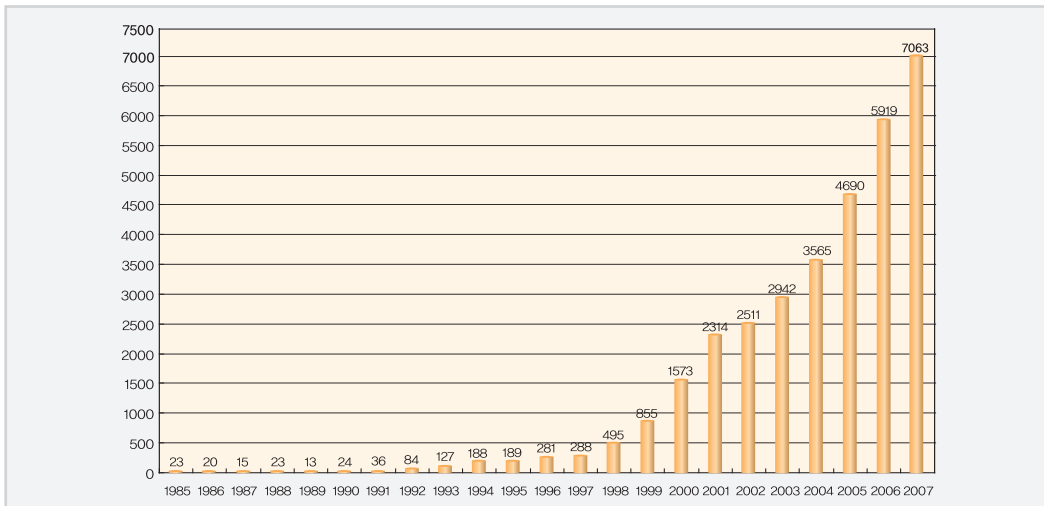
* 상기 정보는 각국 특허청에서 WIPO에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WIPO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에 한정된 정보임. 현재 WIPO에 상기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청은 2008. 12. 현재 한국특허청을 포함하여 33개국임



PCT 국제출원가이드

7. 한국 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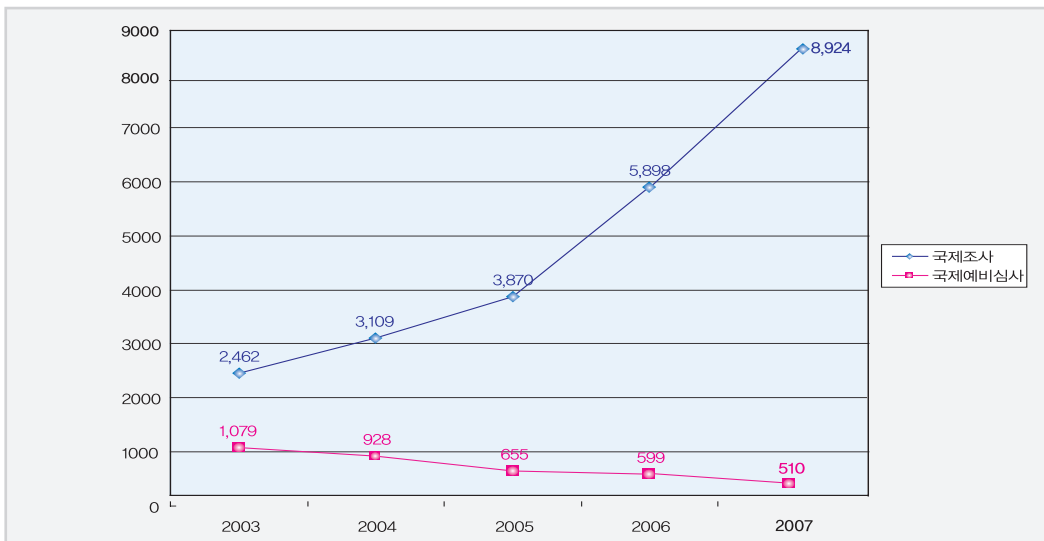
(단위 : 건)



* 기준 : 특허청 통계

8. 한국 특허청 국제조사·예비심사 업무수행 현황

(단위 : 건)



* 기준 : 특허청 통계

9. 한국 특허청 해외 국제조사 현황¹⁴⁾(수리관청별)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1.	계
국제사무국 (IB)	1	2	2	2	2	3	13	32	119	176
필리핀(PH)	-	-	13	6	9	17	7	13	10	75
베트남(VN)	-	-	-	2	-	-	1	1	1	5
인도네시아 (ID)	-	-	-	-	-	-	2	-	1	3
뉴질랜드 (NZ)	-	-	-	-	-	-	6	19	20	45
싱가포르 (SG)	-	-	-	-	-	-	8	18	29	55
미국(US)	-	-	-	-	-	-	690	2,735	9,326	12,751
말레이시아 (MA)	-	-	-	-	-	-	8	35	70	113
계	1	2	15	10	11	20	735	2,853	9,576	13,223

* 1999. 12.부터 시작, 당해 연도 통계 없음

14) 한국 특허청은 한국 이외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2009.1.1 부터 개시)에 대하여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특허청으로부터의 국제조사의뢰(2006.1.1. 개시)건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편 집 위 원

고객서비스국장	이 영 대
국제출원과장	이 대 진
사무관	한 상 규
주무관	나 양 희

PCT국제출원가이드

-
- * 발 행 일 : 2008년 12월
 - * 발 행 처 : 특허청 고객서비스국 국제출원과
 - * 문 의 처 : 특허청 고객서비스국 국제출원과
Tel. 042-481-5208
Fax. 042-472-7140
 - * 인 쇄 처 : 현대영상미디어
-

ISBN 978-89-6199-179-7 13500

